

[2016 최저임금 실태조사 토론회]

참을 수 없는 궁극의 가벼움

여성 임금

일시 _ 2016. 10. 27.(목) 오후 2시

장소 _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한국여성노동자회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후원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토론회 순서

사회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 발제 [저임금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연구]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송민정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 토론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부장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저임금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연구

2016. 10. 27.

연구진 : 이정아(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송민정(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

차 례

제1장 서 론	6
1. 들어가며	6
2. 선행연구	7
제2장 공식통계를 활용한 임금실태 분석 결과	8
1. 자료 설명	8
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9
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19
1) 조사개요	19
2) 2016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황	21
3) 2016년 최저임금 수혜자 노동자 현황	26
4) 비정규직 중 최저임금 미만 및 수혜자 현황	32
제3장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조사 결과	35
1. 조사개요	35
2.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조사 결과	39
1) 생계비	39
2) 임금실태	46
3) 최저임금	53
4) 기타 노동조건	60
제4장 결 론	66

표와 그림 차례

[표 2-1] 2015년 배율에 따른 등위선별 특성	11
[표 2-2] 산업별 분포	12
[표 2-3] 일자리 지도1: 전체 노동자 분포	13
[표 2-4] 일자리 지도2: 일자리별 여성 비중	14
[표 2-5] 일자리 지도3: 일자리별 한계 노동자 비중	14
[표 2-6] 일자리 지도4: 일자리별 1등위선 이하 비중	15
[표 2-7] 일자리 지도5: 일자리별 1등위선 이하의 여성 비중	15
[표 2-8] 사업체 규모별 분포	18
[표 2-9] 2015년 3월 및 2016년 3월, 경제활동인구 성별현황	19
[표 2-10]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산업별 현황	22
[표 2-11]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직업별 현황	23
[표 2-12]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종사상지위별 현황	24
[표 2-13]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사업체규모별 현황	25
[표 2-14]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노동조합 현황	26
[표 2-15] 최저임금 수혜범위 노동자들의 산업별 현황	27
[표 2-16] 최저임금 수혜범위 노동자들의 직업별 현황	29
[표 2-17] 최저임금 수혜범위 노동자들의 종사상지위별 현황	30
[표 2-18] 최저임금 수혜범위 노동자들의 사업체 규모별 현황	31
[표 2-19] 최저임금 수혜범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현황	32
[표 2-20] 비정규직 성별 최저임금 미달자 및 수혜자 현황 1	34
[표 2-21] 비정규직 성별 최저임금 미달자 및 수혜자 현황 2	34
[표 3-1] 응답자 일자리의 산업, 직업 분포	47
[표 3-2] 응답자 일자리의 산업, 직업 분포 - 온라인	48
[표 3-3] 고용형태별 비중 및 월급여	50
[표 3-4] 산업, 직업별 평균 월급여	51
[표 3-5] 산업, 직업별 평균 월급여 - 온라인	52
[표 3-6] 최저임금 인지 여부	54
[표 3-7] 학력별 비중 및 학력별 최저임금 미만 비율	55
[표 3-8] 주휴수당 인지 여부	55
[그림 2-1] 임금 등위선별 분포	12
[그림 2-2] 여성 전체, 1등위선 이하 및 한계 노동자의 연령 분포	17

[그림 2-3] 남성 전체, 1등위선 이하 및 한계 노동자의 연령 분포	17
[그림 3-1] 오프라인 설문조사 지역별 응답자 수	36
[그림 3-2] 오프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연령분포	36
[그림 3-3] 온라인 설문조사 지역별 응답자 수	37
[그림 3-4]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연령분포	37
[그림 3-5] 오프라인 설문조사 학력별(좌), 혼인상태별(우) 응답자 수	38
[그림 3-6] 온라인 설문조사 학력별(좌), 혼인상태별(우) 응답자 수	38
[그림 3-7] 가구규모별 취업자 수 분포	39
[그림 3-8] 온라인 응답자들의 가구규모별 취업자 수 분포	40
[그림 3-9] “현재 가구 총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가	40
[그림 3-10] “현재 가구 총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가 - 온라인	41
[그림 3-11] “가구 소득에서 자기 임금의 비중”과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가	42
[그림 3-12] “가구 소득에서 자기 임금의 비중”과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가 - 온라인	42
[그림 3-13] “생계비 부족시 선택한 대응방법”	43
[그림 3-14] “생계비 부족시 선택한 대응방법”-온라인	43
[그림 3-15] 추가소득 발생시 사용처	44
[그림 3-16] 온라인 추가소득 발생시 사용처	45
[그림 3-17] 가구규모별 “생계에 필요한 자기 소득 수준”	45
[그림 3-18] 가구규모별 “생계에 필요한 자기 소득 수준” - 온라인	46
[그림 3-19] 사업체 규모별 분포 및 평균 월급여	49
[그림 3-20] 사업체 규모별 분포 및 평균 월급여 - 온라인	49
[그림 3-21] 실제 및 인지된 시간당 임금 분포	53
[그림 3-22] 임금구성항목	53
[그림 3-23] 최저임금 미만 지불시 대응 경험	56
[그림 3-24] 최저임금 미만 지불시 대응 경험 - 온라인	56
[그림 3-25] 과거 임금과 현재 임금 비교	58
[그림 3-26] 현 직장에서 근속기간과 총 경력기간 분포	59
[그림 3-27] 현재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유	59
[그림 3-28] 현재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유 - 온라인	60
[그림 3-29]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61
[그림 3-30]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온라인	61
[그림 3-31] 휴게시간의 활용 가능성	62
[그림 3-32] 휴게시간의 활용 가능성 - 온라인	62
[그림 3-33] 부당 요구 경험	63
[그림 3-34] 부당 요구 경험 - 온라인	63

제1장 서론

1. 들어가며

- 지난 8월에 평균 연봉이 52천 달러인 미국 실리콘밸리의 법원 공무원들이 상대적 빈곤 속에서 파업에 돌입했다는 최근의 기사¹⁾는 임금이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주 40시간을 쉬지 않고 일 할 때 벌 수 있는 연간 급여가 15천 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임을 고려하면 연봉 52천 달러는 중상위 임금층에 속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 법원 공무원들이 상대적 빈곤을 호소하는 까닭은 최소 연간 4만 달러의 지불이 필요한 높은 주거비 수준 때문임.
- 생활 자료, 즉 생계비와 비교하지 않으면 임금 수준이 높거나 낮다고 단언하여 말 할 수 없는 것.
-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임금’이라는 용어는 전체 임금분포에서 하위 수준이라는 상대적 위치 개념으로 쓰이고 있음. 만약 한국 사회에서 ‘저임금’이라는 용어가 활용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저임금’이 단지 상대적 위치로서 의미만 갖는다면 ‘저임금 문제’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저임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수준이 절대적으로 생계비에 부족하기 때문임을 드러내며, 특히 여성에게 그것이 더 문제가 된 까닭을 알기 위한 실마리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 고용노동부, 통계청의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이 직면하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3장에서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대

1) 오마이뉴스 “평균연봉 5700만 원 공무원, 여기선 하층계급: [현장] 창조경제의 본 고장 실리콘밸리에서 본 창조경제의 이면” 2016. 10. 15.

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함.

-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임금실태에 대한 본 조사는 생계비와 관련된 경험과 현재 생활을 함께 질문함으로써 여성 저임금의 '문제적 상황을 드러냄.

2. 선행연구

- 여성 일자리의 저임금화에 대해서 '젠더의 임금격차'라는 주제도 오랜 시간 논의되어 옴. 신고전학파의 인적자본이론에 기초한 여성에 대한 인적자본투자가 남성대비 적고 그 결과 여성이 저생산, 저임금 직종에 집중적으로 취업해 성별직종분리가 나타났다는 주장(금재호, 2004)²⁾은 여성의 학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사회진출이 많아지며,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음.
- 스웨덴의 은행산업 단위의 분석을 통해 젠더의 임금격차를 설명한 Acker는 1991년에는 여성의 임금결정 교섭력이 남성대비 낮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젠더 사이에 발생한 임금 격차를 설명하였고,³⁾ 2006년에 기존의 연구를 발전시켜 젠더화 된 조직으로부터 발생하는 성분리 현상을 조명함.⁴⁾ 2009년 연구에서는 여성의 관리직과 전문직 지위로 진출이 적은 것으로 대변되는 임금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한 체제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시킴.⁵⁾
- OECD에서 2013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전일제 노동자들을 기준으로 젠더간 임금격차 36.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26.6%로 2위를 차지한 일본과도 10%p 높은 수준을 기록함. 한국은 15년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을뿐더러 OECD 국가들의 젠더간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 반대로 전년대비 상승함.⁶⁾

2) 금재호(2004),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성차별 - 직종분리를 중심으로」, 『응용경제』, 6권 3호

3) Acker, J. (1991) 'Thinking about wages : the gendered wage gap in swedish banks', Gender&Society, 5(3)

4) Acker, J. (2006) 'The gender regime of swedish banks', Scandinavian Journal Of management, 22(3)

5) Acker, J. (2009) 'From glass ceiling to inequality regimes', Sociologie du travail, 51

6) OECD(2013) Gender wage Gap "<https://www.oecd.org/gender/data/genderwagegap.htm>"

-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성별 임금격차에 주목하고 있음.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격차의 절반 가까이가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그러나 성별 임금격차에 단순히 차별적 요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결정의 메커니즘에 차별의 과정이자 결과가 본래적으로 내재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입장도 존재함.
- 즉, 임금을 결정짓는 요소는 단순히 노동의 수요-공급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다양한 요소들의 결과임. 또한 임금체계는 매우 복잡하여 노동시장의 부문별, 산업 위계별, 소득 계층별로 매우 이질적인 방식의 임금 결정 메커니즘이 작용함.
- 따라서 저임금의 원인은 노동의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존의 인식이나 저임금이 많이 분포하는 산업의 특징 때문일 가능성이 높음. 이정아(2014)⁷⁾는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하여 여성, 고령자,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평균임금수준이 비교적 낮은 결과를 확인하였고, 변수들이 평균임금수준보다 저임금 노동비율 및 최저임금 미만율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함. 즉, 저임금 일자리들이 다른 일자리들과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함.
- 그 외에도 저임금층의 규모를 추정하는 기존 연구들에서 여성 비중이 높다는 분석 결과들이 제시됨. 그러나 이러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에 관해 주목한 기존 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생활에 관한 인식을 함께 드러냄.

제2장 공식통계를 활용한 임금실태 분석 결과

1. 자료 설명

7) 이정아(2014), 「한국최저임금제 연구 -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 본고에 활용하는 공식통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5년 원자료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원자료임.
-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각 자료는 모두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실태 파악을 위한 대표자료이지만 각자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지된 한계 속에서 두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분석함.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매년 6월 급여일이 포함된 주에 방문하여 조사하므로 비교적 정확한 임금과 시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사업체 조사이며,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경제활동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질문이 포함되어 비교적 더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구조사임.
- 전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후자에 비해 임금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후자는 임금과 시간에 관한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단점이 있음.
- 단지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떤 자료를 활용하든지 큰 영향은 없으나 한 시점에서 규모를 파악하려면 각 자료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임금실태 조사하기에 앞서 두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전체 노동시장 속에서 저임금 여성노동자층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일자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는 공공, 가구내 고용, 국제기관,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계로 지니지만, 최저임금의 산입

범주와 비슷한 개념의 정액급여와 소정노동시간 정보를 포함하므로 상대적으로 더 정확한 시간당 임금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

- [표 2-3]은 사업체 조사 자료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휴수당을 고려했을 때(이하 '고려')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이하 '미고려') 시간당 정액급여를 각각 나타냄.
- 자료 전체에서 여성 비중은 약 41%인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층에서 여성 비중은 '미고려'에서 54%, '고려'에서 58.07%임.
- 저임금층으로 갈수록 여성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지지만, 법적 시간당 임금 개념에 부합하는 '고려'와 '미고려' 시간당 정액급여를 비교하면 특히 최저임금 미만 구간에서 여성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임.
- '고려' 기준 1등위선(최저임금 1.5배 미만) 이하에 분포하는 여성 비중은 전체 여성의 62.14%인데 반해 남성은 33.06%이며, 2등위선 이하는 각각 78.78%와 52.18%.
- 최저임금과 매우 밀접하게 변동하는 구간은 3등위선까지인데⁸⁾ 3등위선 이하 비중은 여성이 86.79%, 남성은 66.31%임.
- 여성 6명 중 5명은 최저임금의 영향권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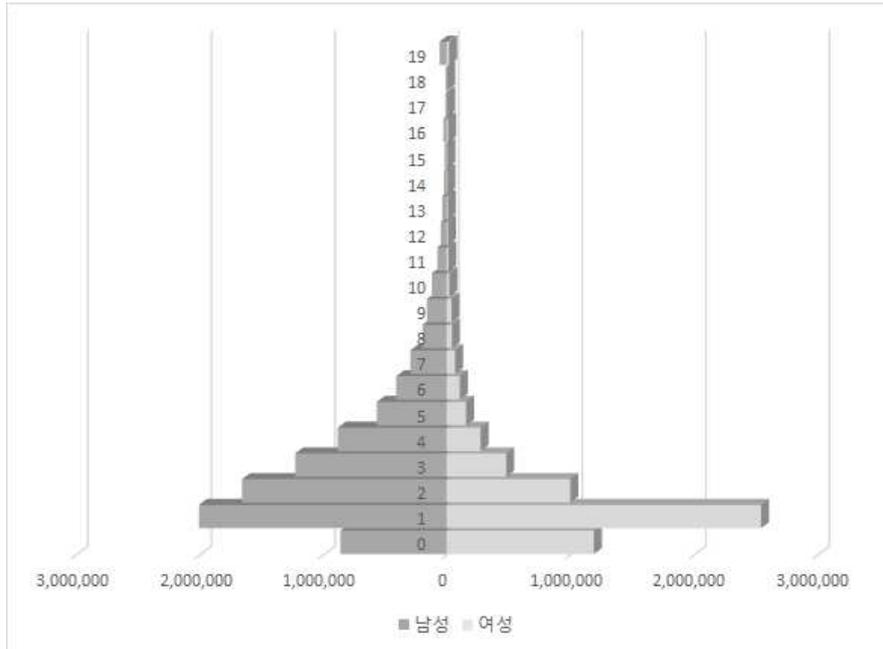
8) 필자가 분석하였던 기존 연구에서 최저임금의 2.44배 이하 구간의 평균 명목인상률과 최저임금의 명목인상률의 상관계수는 0.91로 밀접하게 변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표 2-3] 2015년 배율에 따른 등위선별 특성 (시간당 정액급여 기준, 단위 : %)

등위선		주휴수당 미고려					주휴수당 고려			
	배율	금액	분포	여성 분포	남성 분포	여성 비중	분포	여성 분포	남성 분포	여성 비중
0	-1	<5,580	4.64	6.11	3.61	54.00	13.98	19.81	9.93	58.07
1	1-1.5	<8,370	28.61	41.76	19.49	59.78	30.99	42.33	23.13	55.94
2	1.5-2	<11,160	19.15	21.96	17.19	46.98	18.10	16.64	19.12	37.66
3	2-2.5	<13,950	13.71	11.13	15.49	33.28	11.63	8.01	14.13	28.22
4	2.5-3	<16,740	9.20	6.20	11.27	27.63	7.88	4.57	10.17	23.75
5	3-3.5	<19,530	6.56	3.77	8.51	23.51	4.92	2.61	6.52	21.74
6	3.5-4	<22,320	4.57	2.59	5.94	23.20	3.51	1.77	4.71	20.68
7	4-4.5	<25,110	3.51	1.78	4.72	20.75	2.46	1.14	3.38	18.89
8	4.5-5	<27,900	2.18	1.02	2.98	19.21	1.61	0.70	2.25	17.70
9	5-5.5	<30,690	1.88	0.99	2.49	21.66	1.35	0.65	1.84	19.64
10	5.5-6	<33,480	1.35	0.59	1.87	17.98	0.96	0.35	1.38	15.11
11	6-6.5	<36,270	1.08	0.42	1.54	15.77	0.61	0.23	0.87	15.75
12	6.5-7	<39,060	0.80	0.26	1.17	13.25	0.39	0.16	0.54	17.36
13	7-7.5	<41,850	0.64	0.25	0.91	16.05	0.30	0.16	0.40	21.84
14	7.5-8	<44,640	0.40	0.17	0.57	16.97	0.19	0.11	0.25	23.03
15	8-8.5	<47,430	0.32	0.15	0.44	19.22	0.16	0.10	0.20	25.47
16	8.5-9	<50,220	0.30	0.21	0.37	27.67	0.26	0.20	0.31	31.46
17	9-9.5	<53,010	0.18	0.11	0.23	24.81	0.11	0.08	0.13	28.62
18	9.5-10	<55,800	0.13	0.09	0.16	27.53	0.09	0.07	0.10	31.49
19	10-	<58,590	0.80	0.45	1.04	23.02	0.51	0.32	0.65	25.69
전 체			100	100	100	40.96	100	100	100	40.96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5년 원자료

[그림 2-3] 임금 등위선별 분포 (주휴수당 고려, 단위 : 명)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5년 원자료

-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당 정액급여를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은 4.64%이지만 주휴수당을 받았다는 가정 하에 시간당 정액급여를 재계산하면 미만율이 13.98%로 높아짐.
- 최저임금 미준수의 높은 비중이 주휴수당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음. 미준수 전체의 3분의 2 규모임.

[표 2-4] 산업별 분포 (단위 :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하수·폐기물·환경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음·박식업	출영·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복지	예술·스포츠	협회·단체·타인 서비스업
ㄱ	0.22	0.09	24.45	0.42	0.5	6.94	13	4.71	7.47	3.21	4.72	2.61	5.84	6.47	5.1	8.67	1.51	4.05
ㄴ	0.24	0.03	18.49	0.01	0.24	3.58	16.53	4.01	18.08	1.09	1.8	6.22	1.94	5.61	2.63	12.37	2.28	4.84
ㄷ	24.58	10.01	25.76	14.57	15.89	12.86	44.89	15.16	67.03	29.2	55.08	33.91	31.54	47.63	58.06	82.22	48.36	46.18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5년 원자료

주 : ㄱ 전체 종사자의 산업별 분포 ㄴ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미만인 '한계 노동자'의 산업별 분포 ㄷ 산업 내 여성비중

- 주휴수당 미지급의 문제는 더욱 더 여성의 문제임을 알 수 있음. 전체 분포에 비해 ‘한계 노동자’⁹⁾ 분포가 더 높은 숙박및음식점업, 보건및사회복지업의 여성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 이와 관계가 있음.
- 이하의 일자리 지도들은 산업과 직업을 교차해서 여성들이 어떤 일자리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저임금 일자리가 여성에게 배분되고 있는지 보여줌.
- 업종 중에서는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업, 교육서비스업에, 직업 중에서는 서비스 종사자로 여성이 편중되어 있음.

[표 2-5] 일자리 지도1: 전체 노동자 분포 (단위 : %)

	관리자	전문기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 숙종사자	기능 관련 종사자	장 기 조 작 종 사 자	단 순 무 종 사 자	합 계
농림어업	0	0.03	0.06	0	0	0.05	0.01	0.02	0.05	0.22
광업	0	0	0.02	0	0	0	0.02	0.03	0.01	0.09
제조업	0.4	3.16	5.54	0.1	0.88	0.04	3.16	9.28	1.89	24.45
전기가스수도	0.01	0.11	0.12	0.01	0	0	0.04	0.11	0.02	0.42
하수폐기물환경	0.01	0.05	0.11	0	0.01	0	0.02	0.17	0.12	0.5
건설업	0.11	1.15	1.28	0	0.13	0.05	2.76	0.33	1.14	6.94
도소매업	0.12	0.93	3.34	0.15	5.36	0.01	0.51	0.63	1.96	13
운수업	0.06	0.2	1.25	0.11	0.15	0	0.2	2.04	0.7	4.71
숙박음식점업	0.03	0.06	0.34	4.05	0.6	0	0.12	0.05	2.23	7.47
출판영상통신업	0.07	1.85	0.85	0.01	0.25	0	0.11	0.02	0.06	3.21
금융보험업	0.09	0.43	2.42	0.02	1.68	0	0.01	0.02	0.06	4.72
부동산임대업	0.02	0.19	0.67	0.02	0.07	0	0.14	0.26	1.24	2.6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12	3.06	2.1	0.03	0.21	0	0.15	0.12	0.05	5.84
사업서비스업	0.06	0.65	2.54	0.62	0.43	0.05	0.38	0.7	1.05	6.47
교육서비스업	0.04	3.66	0.86	0.08	0.1	0	0.02	0.13	0.21	5.1
보건사회복지	0.05	5.76	0.79	1.27	0.02	0.01	0.06	0.17	0.54	8.67
예술스포츠	0.01	0.31	0.35	0.49	0.09	0.04	0.02	0.03	0.16	1.51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	0.02	0.85	0.91	1.18	0.08	0	0.6	0.13	0.27	4.05
합 계	1.21	22.46	23.55	8.13	10.07	0.26	8.3	14.25	11.77	100

9)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면 최저임금 이상이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다시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 대해 합의된 명칭이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임의로 ‘한계 노동자’라고 부름

[표 2-6] 일자리 지도2: 일자리별 여성 비중 (단위 :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 자	사무 종사 자	서비스 종사 자	판매 종사 자	농림 어업 관련 종사 자	기능 및 관련 종사 자	장 기 계 조 및 립 종사 자	단 순 무 종사 자	합 계
농림어업	3.11	5.88	33.42	43.44	32.28	17.89	13.81	2.78	43.07	24.58
광업	6.70	2.95	24.63	64.54	13.94	-	4.78	0.88	13.63	10.01
제조업	6.96	16.94	31.60	79.70	14.92	26.14	25.13	23.01	44.26	25.76
전기가스수도	1.90	9.67	27.90	11.72	23.68	0.00	5.40	5.06	32.61	14.57
하수폐기물환경	3.52	14.98	40.82	99.13	11.13	29.66	1.26	2.01	14.65	15.89
건설업	5.75	9.61	35.17	40.20	9.10	9.33	5.79	3.83	12.05	12.86
도소매업	11.10	34.44	53.47	75.77	48.49	62.67	19.88	6.37	43.73	44.89
운수업	8.90	6.96	32.68	65.38	36.76	0.00	4.61	1.49	17.33	15.16
숙박음식점업	35.94	68.45	44.08	68.38	78.13	30.97	48.92	24.80	67.30	67.03
출판영상통신업	8.19	23.84	42.63	57.50	35.29	0.00	3.52	10.84	51.76	29.20
금융보험업	10.57	25.15	51.31	32.59	70.84	0.00	7.01	1.98	72.20	55.08
부동산임대업	10.37	37.83	47.61	67.87	43.03	0.00	0.84	0.89	35.88	33.9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8.69	21.65	48.02	74.35	37.26	12.17	7.34	18.05	55.53	31.54
사업서비스업	9.23	40.93	59.80	60.13	51.65	24.10	8.49	17.45	51.11	47.63
교육서비스업	35.18	57.83	57.58	91.77	91.01	29.38	10.41	9.43	75.05	58.06
보건사회복지	40.25	86.47	64.54	91.13	44.17	13.14	22.70	10.02	77.37	82.22
예술스포츠	15.78	41.63	51.49	53.78	63.58	17.89	2.89	4.01	54.78	48.36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	13.59	31.19	47.92	80.44	58.02	53.40	2.00	13.97	50.54	46.18
합 계	11.20	44.91	45.51	72.50	50.47	20.27	14.48	17.11	45.75	41.00

주: 진한 글씨는 60% 이상 여성 집중 일자리

[표 2-7] 일자리 지도3: 일자리별 한계 노동자 비중 (단위 : %)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 자	사무 종사 자	서비스 종사 자	판매 종사 자	농림 어업 관련 종사 자	기능 및 관련 종사 자	장 기 계 조 및 립 종사 자	단 순 무 종사 자	합 계
농림어업	0.00	2.12	4.12	10.53	10.03	17.38	4.49	6.68	16.47	10.14
광업	1.43	0.91	2.00	9.86	0.00	-	1.62	3.98	7.85	3.03
제조업	0.40	1.34	2.93	24.06	2.66	21.32	10.22	8.77	17.20	7.04
전기가스수도	0.25	0.12	0.31	0.25	0.87	0.00	0.00	0.16	2.66	0.33
하수폐기물환경	0.00	1.65	3.85	9.15	4.07	10.64	3.80	2.67	9.08	4.52
건설업	0.14	5.30	6.64	2.76	3.14	10.28	4.46	9.49	2.16	4.81
도소매업	0.74	3.38	7.95	22.30	15.37	0.43	8.65	6.90	15.11	11.84
운수업	1.08	0.67	4.21	1.87	4.09	0.00	0.51	12.15	8.90	7.94
숙박음식점업	4.30	4.69	7.94	24.34	24.08	3.84	8.86	6.81	22.85	22.53
출판영상통신업	0.00	1.55	2.92	24.57	11.35	0.00	0.74	2.82	27.38	3.15
금융보험업	0.45	2.13	1.86	4.38	6.45	0.00	0.00	0.20	13.71	3.60
부동산임대업	0.07	8.84	5.38	24.52	13.24	5.03	7.25	9.07	38.53	22.2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00	2.15	4.36	19.18	0.95	0.00	2.74	5.92	7.85	3.09
사업서비스업	0.17	3.05	5.18	11.77	6.06	1.89	7.08	8.41	17.66	8.07
교육서비스업	0.00	3.39	6.37	7.57	7.07	0.71	0.00	7.01	20.60	4.81
보건사회복지	0.32	13.48	7.46	13.92	21.55	17.80	10.70	8.56	21.08	13.29
예술스포츠	4.20	7.38	11.68	19.57	15.52	12.42	5.10	2.96	20.56	14.22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	0.00	7.71	8.53	16.80	16.85	5.02	7.08	11.01	14.05	11.12
합 계	0.47	5.66	4.93	19.78	12.11	11.25	7.15	8.96	18.35	9.32

주: 진한 글씨는 한계 노동자 비중이 14% 이상인 일자리

[표 2-8] 일자리 지도4: 일자리별 1등위선 이하 비중 (단위 : %)

	관리자	전문 가 관 종 사 자	사무 종 사 자	서 비 종 사 자	판 매 종 사 자	농 림 업 종 사 자	기 능 및 관 기 종 사 자	장 기 조 및 작 조 종 사 자	단 순 무 종 사 자	Total
농림어업	8.17	13.14	25.84	76.41	41.55	53.96	24.10	52.82	58.00	41.42
광업	4.39	8.04	20.87	53.39	27.16	-	23.62	31.21	51.19	26.98
제조업	2.16	12.04	24.64	68.55	22.17	70.82	46.71	50.15	71.86	38.97
전기가스수도	0.25	1.83	5.84	16.89	7.64	30.72	3.94	4.17	45.24	6.56
하수폐기물환경	3.10	12.88	32.01	60.02	24.37	73.98	40.61	28.12	44.25	31.74
건설업	4.43	27.88	36.97	23.48	20.61	45.53	20.90	38.81	13.87	24.61
도소매업	5.67	18.66	39.73	78.68	61.67	91.97	45.93	49.69	77.74	53.91
운수업	7.39	8.08	28.18	15.81	43.40	0.00	16.27	58.13	55.53	43.81
숙박음식점업	34.18	37.68	49.90	84.49	89.76	51.57	62.60	62.14	87.20	83.09
출판영상통신업	1.19	14.94	22.65	94.35	51.69	0.00	17.81	32.38	83.38	21.21
금융보험업	1.09	9.06	16.70	53.57	41.00	34.73	23.09	20.24	65.98	25.12
부동산임대업	9.24	38.95	40.49	77.53	55.35	68.54	42.79	54.47	95.86	68.7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51	15.49	26.70	70.67	20.94	39.76	17.05	38.14	56.34	20.57
사업서비스업	5.04	27.32	39.87	68.81	41.82	47.07	39.23	58.86	72.04	48.49
교육서비스업	0.92	24.34	39.24	62.75	60.69	41.00	32.75	37.21	77.05	30.53
보건사회복지	5.04	54.72	43.48	86.03	57.18	93.42	62.66	52.54	90.45	60.25
예술스포츠	20.28	45.71	57.50	58.70	75.07	56.21	44.86	45.37	82.41	58.47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	11.16	58.96	47.84	73.35	73.37	64.75	46.86	60.74	76.74	60.15
Total	4.03	29.64	31.87	78.74	53.77	55.23	36.07	50.76	72.45	44.92

주: 진한 글씨는 60% 이상의 저임금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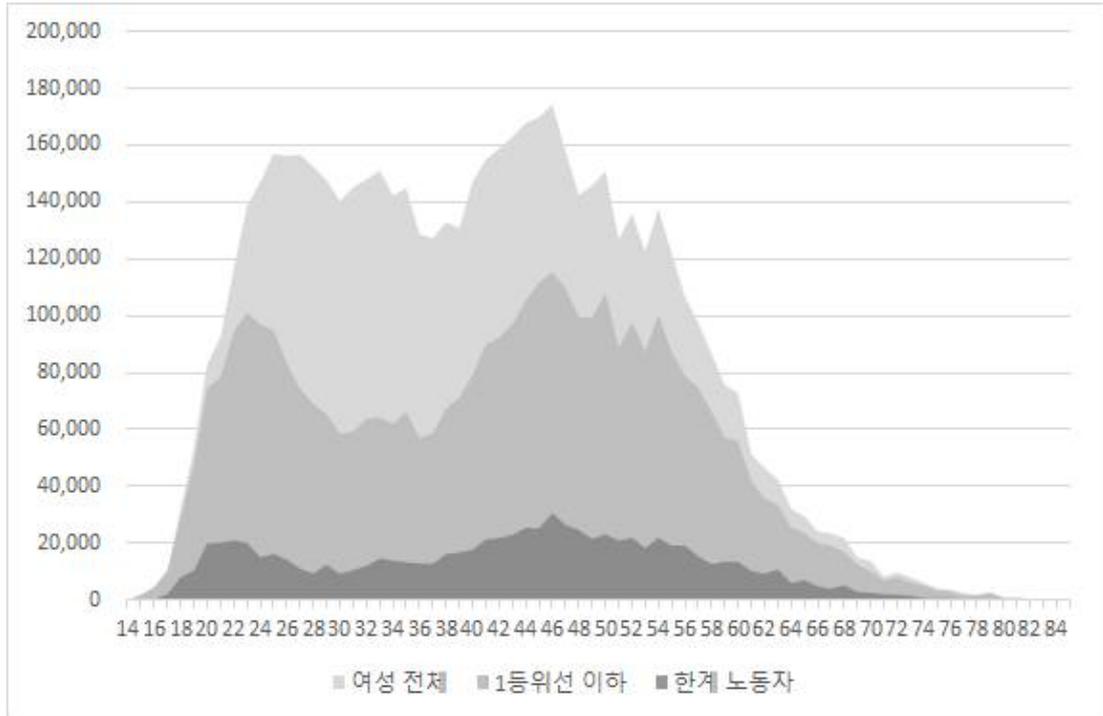
[표 2-9] 일자리 지도5: 일자리별 1등위선 이하의 여성 비중 (단위 : %)

	관리자	전문 가 관 종 사 자	사무 종 사 자	서 비 종 사 자	판 매 종 사 자	농 림 업 종 사 자	기 능 및 관 기 종 사 자	장 기 조 및 작 조 종 사 자	단 순 무 종 사 자	합 계
농림어업	14.23	10.51	66.06	48.80	65.92	28.71	27.43	3.28	64.75	42.55
광업	74.52	22.17	50.12	91.70	17.87	-	18.23	1.00	23.96	20.48
제조업	20.91	40.84	59.79	88.95	29.87	23.97	45.97	34.22	52.93	42.89
전기가스수도	0.00	24.27	70.66	47.88	65.13	0.00	10.85	4.99	41.09	40.39
하수폐기물환경	0.00	36.59	67.18	98.54	27.59	40.09	1.61	3.86	24.92	28.19
건설업	13.65	16.01	57.33	75.85	13.89	14.42	5.82	1.67	25.82	23.80
도소매업	16.62	47.46	75.96	76.97	63.82	62.81	31.92	9.06	44.99	58.30
운수업	3.82	15.25	53.66	45.37	57.68	-	19.64	1.39	24.04	17.12
숙박음식점업	65.14	68.85	46.20	71.93	81.73	57.89	60.77	38.58	68.47	70.68
출판영상통신업	5.73	38.02	62.56	59.44	46.98	-	6.82	18.35	57.70	47.22
금융보험업	31.44	37.30	76.38	27.97	68.93	0.00	26.06	1.70	75.37	70.02
부동산임대업	11.51	53.98	69.48	74.06	48.47	0.00	0.96	1.22	36.16	38.5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92.34	35.18	69.79	87.37	70.85	0.00	10.79	33.77	66.32	53.76
사업서비스업	21.99	60.35	72.96	70.80	69.52	43.83	11.73	26.30	57.81	58.77
교육서비스업	17.19	76.39	72.70	91.50	94.73	67.32	29.55	15.39	75.95	74.60
보건사회복지	66.66	94.76	77.93	92.65	60.69	14.07	32.72	14.01	77.06	89.55
예술스포츠	40.42	42.27	64.36	43.71	64.76	28.19	3.75	6.24	57.71	50.44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	6.43	38.54	67.03	84.49	67.09	82.46	1.89	21.91	51.11	56.97
합 계	30.11	70.12	67.74	76.15	64.80	30.22	29.44	25.16	53.17	56.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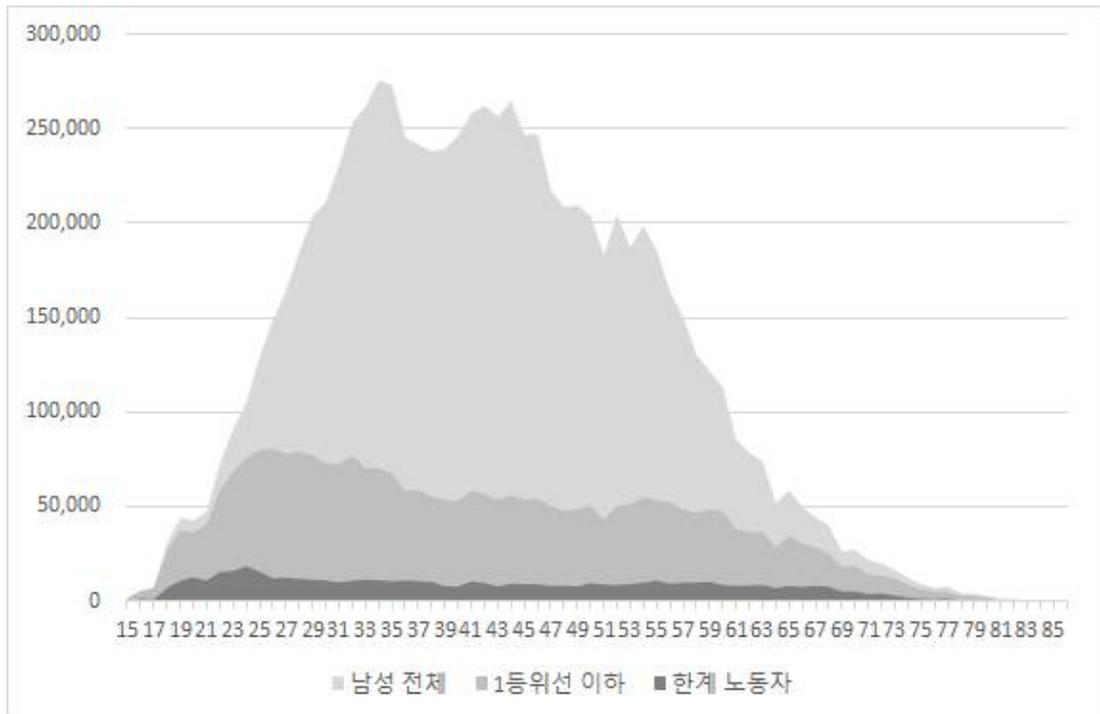
주: 진한 글씨는 60% 이상 여성 집중 일자리

- 여성이 집중된 일자리에서 1등위선 이하의 저임금 비중과 한계노동자 비중이 모두 높으며, 1등위선 이하 일자리는 업종을 불문하고 여성으로 과대대표 되어 있음.
- 저임금이 여성에게 더 위험한 ‘현상’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 [그림 2-4]에서 보듯이, 여성 일자리의 저임금화 경향은 20대 초반을 제외하면 30대 후반부터 진행됨.
- 연령대별로 1등위선 이하의 비중을 나타내면 25세 미만에서 약 80%, 25-39세에는 약 47%로 떨어졌다가 40세를 넘어서며 약 69%로 크게 높아지는데, 남성은 70세 이상이 되어야 약 69%로 비중이 같아짐.
- 남성의 1등위선 이하 및 한계 노동자 비중은 25세를 넘어서면 감소하지만 여성의 연령 패턴은 남성과 상이함.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곡선만 M자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곡선도 꼬리가 긴 M자형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했다 다시 참가하는 선택이 왜 어려울 수 있는지를 보여줌.
- 그러나 25세 미만 청년층에게 저임금은 젠더를 불문한 공통의 문제.

[그림 2-4] 여성 전체, 1등위선 이하 및 한계 노동자의 연령 분포 (단위 : 명)



[그림 2-5] 남성 전체, 1등위선 이하 및 한계 노동자의 연령 분포 (단위 : 명)



- 사업장 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1등위선 이하 및 한계 노동자 비중이 높고 여성 비중이 높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제일 작은 숙박음식점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
-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전체 여성 비중보다 한계 노동자 내 여성 비중이 더 높음.

[표 2-10] 사업체 규모별 분포 (단위 : %)

사업체 규모	전체 분포	여성 분포	여성 비중	1등위선 이하 분포	한계 노동자 분포	한계 노동자 비중	한계 노동자 내 여성 비중
5인 미만	27.49	35.87	53.31	38.59	47.08	15.96	64.76
6-29인	32.3	31.02	39.40	32.82	30.87	8.91	57.10
30-299인	27.65	23.49	34.82	24.17	19.52	6.58	53.61
300인 이상	12.55	9.62	31.44	4.43	2.53	1.88	57.72
전 체	100	100	40.96	100	100	9.32	60.04

- 최저임금은 임금구조의 밑을 과대대표하고 있는 여성에게 더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의 위반은 여성에게 더 위험한 현상으로 실재함.
- 특히 이러한 최저임금의 미준수 문제의 높은 비중이 주휴수당의 미지급에서 비롯함.
- 여성의 일자리가 분리,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함.
- 또한 연령대별 저임금층 규모의 곡선이 여성과 남성 간에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경제활동을 지속하거나 노동시장 이탈 후 재참가를 결정할 때 소득에 대한 '기대'가 다르게 형성됨.
- 이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중요하지만 위반의 위험이 여성에게 더 편중된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살펴봄.

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1) 조사개요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부가자료를 사용하여 기초분석한 후 전체와 여성의 임금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거나 ILO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의 90%~110%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는 최저임금 수혜자인 여성노동자들의 현황을 보고자 함.

[표 2-11] 2015년 3월 및 2016년 3월, 경제활동인구 성별현황 (단위 : 명, 원)

분류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015	전체	42,874,133	26,576,655	25,500,822	1,075,834	16,297,478
	남자	20,982,490	15,408,137	14,789,180	618,956	5,574,353
	여자	21,891,643	10,711,641	10,711,641	456,877	10,723,125
2016	전체	43,313,444	26,955,360	25,800,258	1,155,102	16,358,084
	남자	21,229,001	15,619,954	14,918,835	701,118	5,609,047
	여자	22,084,443	11,335,406	10,881,422	453,954	10,749,037
분류		임금노동자수	시간당 평균임금(원)	최저임금 미달자	최저임금 수혜자	
2015	전체	18,798,927	12943.47	2,325,713	1,914,612	
	남자	10,646,833	15244.33	833,409	663,103	
	여자	8,152,094	9938.50	1,492,304	1,251,509	
2016	전체	19,232,564	13,619.94	2,640,476	1,846,518	
	남자	10,809,872	16,045.99	961,095	664,091	
	여자	8,422,692	10,506.30	1,679,380	1,182,427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2016년 각 해당연도 3월 원자료
 참고 : 시간당 평균임금 = 최근3개월평균임금/[(일한시간)*(365/7/12)]

- [표 2-11]에 나타난 2015년과 2016년의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둘 다 전체 생산가능 인구 중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하지만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수는 모두 남성이 400만 명 이상 많음.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여성이 50만 명 이상 많음.

- 2015년과 2016년 사이 모든 항목에서 성별 비율은 큰 변화가 없으나 전체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여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모든 항목에서 인원이 소폭 증가하여 나타남.
- 임금노동자수는 2015년에 18,798,927명이고, 남성이 56.64%, 여성이 43.36%를 차지함. 2016년에는 19,232,564명인데 그중 남성이 56.21%이고, 여성이 43.79%를 차지하여 여성 비율이 0.43%p 소폭 증가함.
-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체를 기준으로 2015년에 약 12,943원인 것에 비해 2016년 약 13,620원으로 677원 상승하였음. 남성은 2015년 약 15,244원에서 2016년 약 16,046원으로 802원 올랐고, 여성은 2015년 약 9,939원에서 약 10,506원으로 567원 증가하였음. 성별 간 시간당 임금차이는 2015년 5,305원인 것에 비해 2016년에는 5,500원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임.
- 2015년에 적용되는 법정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고, 2016년에는 6,030원임. ILO기준 최저임금 수혜자의 범위는 2015년 시간당 5022원 이상 6,138원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이고, 2016년의 최저임금 수혜자는 시간당 5,427원 이상 6,633원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임.
- 최저임금 미달자는 2015년에 전체 2,325,713명인데, 2016년에 전체 2,640,476명으로 314,763명 증가함. 성별비율은 2015년에 여성이 64.17%, 남성이 35.83%인 것에 비해 2016년 여성이 63.60%, 남성이 36.40%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높음. 최저임금 수혜자는 전체 2015년 1,914,612명이었던 것이 2016년에 1,846,518명으로 68,094명 감소함. 2015년의 최저임금 수혜자의 성별비율은 여성이 65.37%, 남성이 34.63%였고, 2016년에는 여성이 64.04%, 남성이 35.96% 비중이어서 미달자와 수혜자가 두 해 모두 여성이 상당히 많음.

2) 2016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현황

-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들의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지위별, 사업체규모별, 노조가입여부 성별 현황을 아래 [표 2-12]부터 [표 2-16]에 2015년 3월과 2016년 3월을 비교하여 나타냄.
- 최저임금 미달자의 성별 비율은 앞선 [표 2-11]에서와 같이 2015년에 전체 2,325,713명인데 여성이 1,492,304명으로 64.17%, 남성이 833,409명으로 35.83%를 차지하고 있고, 2016년에는 전체 2,640,476명 중 남성이 961,095명으로 36.4%, 여성이 1,679,380명으로 63.6% 비중임.
- 아래 [표 2-12]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에 여성의 수가 많고, 2015년과 2016년 모두 19개의 산업대분류 중 14개 산업에서 여성이 많음.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에 가장 많은 비율의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몰려있음(2015년-20.6%, 2016년-19.81%). 다음은 도매 및 소매업(2015년-16.93%, 2016년-15.59%)이고, 세 번째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2015년-10.28%, 2016년-10.3%)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음.
- 남성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는 2015년에는 도매 및 소매업에 137,803명(16.53%), 2016년에는 사업시설관리에 143,790명(14.96%)으로 제일 많은 수가 분포되어 있었고, 두 번째로는 2015년 사업시설관리(133,839명, 16.06%), 2016년 숙박 및 음식점업(140,353명, 15%), 세 번째로는 2015년 숙박 및 음식점업(107,234명, 12.87%), 2016년 도매 및 소매업(133,180명, 14%)이었음.
- 여성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많은 산업은 첫번째가 숙박 및 음식점업(2015년-372,880명, 24.99%, 2016년-382,715명, 22.79%) 이고, 도매 및 소매업(2015년-255,975명, 17.15%, 2016년-278,390명, 16.58%)이 두 번째, 세 번째는 2015년에는 제조업(168,785명, 11.31%), 2016년에는 보건업(199,643명, 11.89%)임.

[표 2-12]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산업별 현황 (단위 : 명)

산 업 (대분류)	2015년 3월			2016년 3월		
	남 성	여 성	합 계	남 성	여 성	합 계
A	7,322	43,223	50,546	18,494	50,913	69,406
B	47,220	168,785	216,005	59,793	177,307	237,100
C	340	0	340	0	1,729	1,729
D	0	1,664	1,664	1,732	908	2,640
E	87,715	6,325	94,039	92,332	8,837	101,169
F	137,803	255,975	393,778	133,180	278,390	411,570
G	71,555	5,860	77,415	74,596	7,527	82,123
H	107,234	372,880	480,115	140,353	382,715	523,068
I	5,443	11,076	16,519	10,269	8,239	18,508
J	3,235	7,600	10,835	6,790	23,668	30,458
K	45,146	29,659	74,805	53,739	30,952	84,691
L	4,122	14,021	18,143	10,850	13,972	24,822
M	133,839	105,130	238,969	143,790	128,265	272,055
N	40,006	69,990	109,996	48,278	78,624	126,903
O	21,587	57,310	78,897	30,357	72,470	102,827
P	38,614	152,924	191,538	46,532	199,643	246,175
Q	34,834	22,773	57,607	27,883	33,880	61,763
R	46,490	128,212	174,702	62,126	139,465	201,592
S	904	38,896	39,800	0	41,876	41,876
합 계	833,409	1,492,304	2,325,713	961,095	1,679,380	2,640,476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2016년 각 해당연도 3월 원자료

참고 :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제조업, C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운수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I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 교육 서비스업, 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남성대비 여성 비중이 높은 분야는 첫 번째가 2015년에는 농업, 임업 및 어업(여성 85.51%, 남성 14.49%)이고, 2016년에는 보건업(여성 81.10%, 남성 18.90%)임. 두 번째가 2015년 보건업(여성 79.84%, 남성 20.16%), 2016년 금융 및 보험업 (여성 77.71%, 남성 22.29%)이며, 세 번째는 두 해 모두

제조업(2015년 - 여성 78.14%, 21.86% / 2016년 - 여성 74.78%, 남성 25.22%)임.

- [표 2-13]은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를 직업별로 나타낸 것으로써, 단순노무종사자가 2015년 45.94%, 2016년 44.1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함. 사무 종사자가 각각 21.68%, 20.43%로 뒤를 이었고, 서비스 종사자가 2015년도 13.11%, 2016년도 13.96%로 세 번째 많은 비중임. 남성과 여성 모두 단순노무 종사자에 2015년 기준 남성 중 53.06%, 여성 중 41.96%, 2016년 남성 49.03%, 여성 41.38% 분포해 많은 수의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단순노무 직업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13]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직업 (대분류)	2015년 3월			2016년 3월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0,837	73,099	113,936	61,456	99,044	160,500
사무 종사자	23,310	87,655	110,965	26,774	104,014	130,787
서비스 종사자	101,747	402,446	504,193	126,323	413,045	539,368
판매 종사자	80,771	224,106	304,876	96,517	272,075	368,593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2,261	3,914	6,176	6,763	2,609	9,372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68,015	38,041	106,056	65,164	51,728	116,89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73,811	36,201	110,012	106,901	41,998	148,899
단순노무 종사자	442,206	626,226	1,068,432	471,196	694,867	1,166,063
합계	833,409	1,492,304	2,325,713	961,095	1,679,380	2,640,476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2016년 각 해당연도 3월 원자료

- 남성은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는 단순노무를 제외하고 서비스 종사자 (2015년 -12.21%, 2016년-13.14%)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었음. 그 다음으로는 2015년에는 판매 종사자(80,771명, 9.69%), 2016년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06,901명, 11.12%) , 세 번째로는 2015년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73,811명, 8.86%), 2016년에는 판매 종사자(96,517명, 10.04%)가 많음.

- 여성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는 단순노무를 제외하고 2015년 403,336명 (26.97%), 2016년 413,045명(24.60%)이 서비스 종사자에 몰려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판매 종사자(2015년-224,106명, 15.02%, 2016년-272,075명, 16.20%)가 많았음.
- 남성대비 여성이 가장 많이 보이는 분야는 2015년에는 서비스직(여성 79.82%, 남성 2.18%), 2016년에는 사무직(여성 79.53%, 남성 20.47%)임. 여성이 편중된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직업은 서비스직, 사무직, 판매직이 두드러짐. 여성 대비 남성이 가장 많이 분포된 분야는 2015년에는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남성 67.09%, 여성 32.91%), 2016년에는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에 남성이 가장 많이 분포함(남성 72.16%, 여성 27.84%). 두 번째로 많은 분야는 2015년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남성 64.13%, 여성 35.87%)이고 2016년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남성 71.79%, 여성 28.21%)임.

[표 2-14]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종사상지위별 현황 (단위 : 명)

종사상지위	2015년 03월			2016년 03월		
	남 성	여 성	합 계	남 성	여 성	합 계
상용근로자	184,139	182,085	366,223	214,122	230,864	444,986
임시근로자	441,269	937,487	1,378,756	536,724	1,142,109	1,678,833
일용근로자	208,001	372,732	580,734	210,250	306,407	516,657
합 계	833,409	1,492,304	2,325,713	961,095	1,679,380	2,640,476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2016년 각 해당연도 3월 원자료

- [표 2-14]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들의 종사상 지위별 현황인데, 임시근로자가 절반 이상(2015년-62.82%, 2016년-63.58%)이며, 임시 및 일용 근로자를 합하였을 경우 전체의 2015년 87.80%, 2016년 83.15%로 많은 수의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들의 고용현황이 불안정할 것으로 추측됨.

- 남성과 여성 모두 임시 및 일용 근로자가 많으며, 남성대비 여성으로 볼 경우 임시근로자에 여성비중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음(2015년 - 여성 68%, 남성 32%, 2016년 - 여성 68.03%, 남성 31.97%).

[표 2-15]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사업체규모별 현황 (단위 : 명)

사업체 규모 (단위 : 명)	2015년 3월			2016년 3월		
	남 성	여 성	합 계	남 성	여 성	합 계
1-4	329,852	705,472	1,035,324	370,152	799,232	1,169,384
5-9	217,158	308,197	525,356	245,285	376,228	621,513
10-29	157,710	270,746	428,456	187,334	303,788	491,122
30-99	75,015	144,208	219,223	98,815	143,284	242,098
100-299	36,217	32,025	68,243	43,803	40,509	84,312
300 이상	17,456	31,656	49,112	15,706	16,340	32,046
합 계	833,409	1,492,304	2,325,713	961,095	1,679,380	2,640,476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2016년 각 해당연도 3월 원자료

- [표 2-15]와 같이 사업체 규모별 현황으로 예외 없이 사업체 규모가 작으면 작을 수록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많았음.
- 5명 미만 사업장에 2015년 기준 남성은 39.58%, 여성은 47.27%가 분포해 있고, 2016년 기준 남성은 38.51%, 여성은 47.59% 분포해 있음. 남성대비 여성으로 보면 두 해 모두 여성이 약 68%, 남성이 약 31% 었음.
- 10인 미만으로 확대해 보면 전체의 67%~68%가 몰려있었음. 여성은 거의 70%, 남성은 64%정도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음.

[표 2-16]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노동조합 현황 (단위 : 명)

노동조합	2015년 3월			2016년 3월		
	남 성	여 성	합 계	남 성	여 성	합 계
없음	730,364	1,368,383	2,098,747	852,253	1,542,618	2,394,871
있 으 나 가입대상이 아님	65,185	103,011	168,196	63,977	119,431	183,408
가 입 대 상 이 나 가입하지 않음	9,416	6,592	16,008	11,395	8,292	19,687
가입함	28,443	14,318	42,762	33,470	9,040	42,509
합 계	833,409	1,492,304	2,325,713	961,095	1,679,380	2,640,476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2016년 각 해당연도 3월 원자료

- [표 2-16]에서 보이듯이 노동조합이 없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은 2015년 2,098,747명, 2016년 2,394,871명으로 전체 최저임금 미달자 중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음. 2016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 여성들 중 91.86%, 남성들 중 88.68%가 무노조 기업에서 근무중임.
- 노동조합이 있지만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가 2015년 16만 3천여 명, 2016년 18만 3천여 명으로 무노조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생각하면 97%의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움.
- 또한 노조가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것에 비해 노조가 있으면 가입한 것이 2015년 남성이 3배, 여성이 2배 이상이었고, 2016년에는 남성 3배, 여성도 1000명 가까이 많은 것으로 보아 노조가 있다면 가입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다만 최저임금 미달자의 노조 가입 현황을 본다면 2015년 대비 2016년에 가입자가 200여명 소폭 하락함. 하지만 노조에 가입된 남성은 2015년 28,443명에서 2016년 33,470명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여성은 2015년 14,318명이었던 것이 2016년 9,040명으로 축소됨.

3) 2016년 최저임금 수혜자 노동자 현황

- 앞서 언급한 ILO기준의 최저임금 수혜범위(90%~110%)에 있는 산업별, 직업

별, 종사상지위별, 사업체규모별, 노조가입여부에 최저임금 수혜범위 노동자들의 성별현황은 아래 [표 2-17]부터 [표 2-21]에 나타냄.

[표 2-17] 최저임금 수혜범위 노동자들의 산업별 현황 (단위 : 명)

산 업 (대분류)	2015년 3월			2016년 3월		
	남 성	여 성	합 계	남 성	여 성	합 계
A	5,631	13,691	19,322	12,892	19,210	32,102
B	56,468	127,740	184,208	67,551	142,377	209,928
C	0	0	0	1,581	1,241	2,822
D	2,163	431	2,594	877	1,100	1,977
E	74,611	8,508	83,120	72,105	7,231	79,336
F	91,405	197,610	289,015	99,247	214,006	313,252
G	50,191	11,254	61,446	53,633	7,929	61,562
H	130,162	314,878	445,039	128,606	286,473	415,079
I	5,935	20,221	26,156	6,622	5,984	12,606
J	2,523	10,757	13,280	3,396	10,861	14,257
K	20,334	24,426	44,760	15,814	21,994	37,808
L	3,712	11,698	15,410	11,726	14,877	26,603
M	65,815	111,679	177,494	79,922	108,859	188,782
N	45,168	53,230	98,397	28,145	29,451	57,596
O	19,547	73,807	93,354	16,399	52,516	68,915
P	32,159	154,800	186,959	15,097	156,856	171,953
Q	23,506	28,980	52,486	20,139	28,578	48,717
R	33,775	69,971	103,746	30,341	63,093	93,433
S	0	17,829	17,829	0	9,790	9,790
합 계	663,103	1,251,509	1,914,612	664,091	1,182,427	1,846,518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2016년 각 해당연도 3월 원자료

참고 :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제조업, C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운수업, H 숙박 및 음식점업, I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 교육 서비스업, P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성별 비율은 [표 2-11]와 같이 2015년 남성이 663,103명으로 34.63%, 여성이 1,251,509명으로 65.37% 차지함. 2016년에는 남성이 664,091명으로 35.96%, 여성이 1,182,427명으로 64.04%를 차지하여

남성비중이 지난해 대비 1.3%p증가하고 같은 범위만큼 여성비중이 축소됨.

- 전체적인 양상은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들과 비슷하게 나타남.
- [표 2-17]과 같이 최저임금 수혜 노동자 중 여성의 수가 많음. 전체기준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2015년 23.24%, 2016년 22.48%가 몰려있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다음은 각각 15.10%, 16.96%를 차지한 도매 및 소매업이고, 세 번째는 2015년에는 보건업(9.76%), 2016년에는 제조업(11.37%)임.
- 남성 최저임금 수혜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제일 많은 수(2015년 130,162명, 19.63%, 2016년-128,606명, 19.37%)가 분포되어 있었음. 두 번째로는 도매 및 소매업(2015년 91,405명, 13.78%, 2016년-99,247명, 14.94%), 세 번째로는 2015년 기준으로는 건설업(73,611명, 11.25%), 2016년 기준으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업(79,922명, 12.03%)에 남성 최저임금 수혜자가 많음.
- 여성 최저임금 수혜자가 많은 산업은 첫번째가 숙박 및 음식점업(2015년-31,878명, 25.16%, 2016년-286,473명, 24.23%)이고, 도매 및 소매업(2015년-197,510명, 15.79%, 2016년-214,006명, 18.10%)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보건업(2015년-154,800명, 12.37%, 2016년-156,856명, 13.27%)으로 두 해 모두 동일한 산업에 여성 최저임금 수혜자가 많이 분포함.
- 남성대비 여성이 많은 비율을 보이는 분야는 첫 번째가 보건업(2015년-여성 82.80%, 남성 17.20%, 2016년-여성 91.22%, 남성 8.78%)이고, 두 번째가 금융 및 보험업(2015년-여성 81%, 남성 19%, 2016년-여성 76.18%, 남성 23.82%)이며, 세 번째는 2015년에는 교육서비스업(여성 79.06%, 남성 20.94%), 2016년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여성 69.02%, 남성 30.98%)임.
- 2015년과 2016년 모두 가구내 고용활동 분야에서는 남성이 관측되지 않고 여성 노동자만 관측고, 건설업에서는 남성이 90% 가량 몰려있음.

- 아래의 [표 2-18]에 나타나듯 최저임금 수혜범위 노동자들에는 미달자와 달리 관리자도 관측됨. 2015년에 남성 350명, 여성 617명이 있고, 2016년에는 남성만 1,055명 있음. 전체적으로 단순노무 종사자가 2015년 37.77%, 2016년 34.70%로 제일 많고, 서비스 종사자가 각각 23.76%, 22.20%로 그 다음을, 판매 종사자가 13.73%, 14.75%로 세 번째를 기록함.

[표 2-18] 최저임금 수혜범위 노동자들의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직업 (대분류)	2015년 3월			2016년 3월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관리자	350	617	968	1,055	0	1,05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6,658	104,337	140,997	36,004	99,617	135,621
사무 종사자	26,245	107,321	133,566	19,942	112,090	132,032
서비스 종사자	111,584	343,268	454,852	102,704	307,200	409,905
판매 종사자	74,703	188,250	262,953	69,632	202,738	272,370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1,402	832	2,234	4,410	751	5,161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55,531	37,265	92,796	68,357	39,996	108,35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70,604	32,505	103,109	90,629	50,655	141,283
단순노무 종사자	286,025	437,115	723,139	271,358	369,381	640,738
합계	663,103	1,251,509	1,914,612	664,091	1,182,427	1,846,518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2016년 각 해당연도 3월 원자료

- 단순노무를 제외하고 남성은 2015년 서비스종사자에 16.83%, 판매 종사자에 11.2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에 10.65% 분포됨. 2016년에는 서비스종사자에 15.4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에 13.65%, 판매 종사자에 10.49% 분포됨.
- 여성은 마찬가지로 단순노무를 제외하면, 2015년 서비스종사자에 23.7%, 판매자에 13.73% 분포하고 2016년에는 서비스종사자에 25.98%, 판매 종사자에 17.15% 분포됨.
- 남성 대비 여성이 많은 직업은 사무직(2015년-여성80.35%, 남성19.65%,

2016년-여성 84.90%, 남성 15.10%), 서비스(2015년-여성 75.47%, 남성 24.53%, 2016년-여성 74.94%, 남성 25.06%), 판매(2015년-여성 71.59%, 남성 28.41%, 2016년-여성 74.43%, 남성 25.57%)임. 반대로 여성대비 남성이 많이 분포된 직업은 2015년에는 장치,기계조립 및 조립종사자(남성 68.48%, 여성 31.52%), 농림어업숙련 종사자(남성 62.76%, 여성 37.24%)인 것에 비해 2015년에는 농업어업숙련 종사자(남성 85.45%, 여성 14.55%)가 특히 두드러지게 남성비율이 높음.

[표 2-19] 최저임금 수혜범위 노동자들의 종사상지위별 현황 (단위 : 명)

종사상지위	2015년 3월			2016년 3월		
	남 성	여 성	합 계	남 성	여 성	합 계
상용근로자	161,124	266,856	427,980	177,245	324,616	501,862
임시근로자	364,291	793,259	1,157,550	339,367	712,000	1,051,367
일용근로자	137,688	191,395	329,082	147,478	145,811	293,289
합 계	663,103	1,251,509	1,914,612	664,091	1,182,427	1,846,518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2016년 각 해당연도 3월 원자료

- [표 2-19]는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종사상 지위를 나타낸 것으로 임시근로자가 2015년 60.46%, 2016년 56.94%이며, 일용근로자가 2015년 17.19%, 2016년 15.88%로 임시 및 일용 근로자가 전체의 각각 77.65%, 72.82%를 차지하고 있음. 최저임금 미달자에 비해서는 적은 비율이지만 불안정한 일자리에 서 근무하는 최저임금 수혜범위의 노동자는 여전히 많음.
- 남성과 여성 모두 임시 및 일용 근로자가 많으며, 남성대비 여성으로 볼 경우 임시근로자에 여성비중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음(2015년-여성 68.53%, 남성 31.47%, 2016년-여성 67.72%, 남성 32.28%).

[표 2-20] 최저임금 수혜범위 노동자들의 사업체 규모별 현황 (단위 : 명)

사업체 규모 (단위 : 명)	2015년 3월			2016년 3월		
	남 성	여 성	합 계	남 성	여 성	합 계
1-4	228,510	505,956	734,467	211,308	465,979	677,287
5-9	186,042	301,683	487,725	203,203	307,183	510,386
10-29	128,207	254,641	382,848	120,114	233,921	354,035
30-99	68,426	131,682	200,107	73,459	125,651	199,110
100-299	37,243	36,840	74,083	42,789	37,300	80,089
300 이상	14,674	20,708	35,382	13,218	12,392	25,610
합 계	663,103	1,251,509	1,914,612	664,091	1,182,427	1,846,518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2016년 각 해당연도 3월 원자료

- 최저임금 수혜범위에 있는 노동자들도 예외없이 규모가 작을수록 많은 수의 노동자수가 몰려있음을 [표 2-20]을 통해 알 수 있음.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와의 차이는 분포의 정도가 달라져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들이 10인 미만 기업에 집중되어 있던 것과 달리 수혜자들은 30인 미만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보임.
- 남성 최저임금 수혜자는 2015년 기준 5인 미만 34.36%, 10인 미만에 62.52%, 30인 미만에 81.85% 분포함. 2016년에는 5인 미만에 31.82%, 10인 미만에 62.42%, 30인 미만에 80.50%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여성 최저임금 수혜자는 2015년 기준 5인 미만에 40.43%, 10인 미만에 64.53%, 30인 미만에 84.88%가 집중되어 있고, 2016년 기준 5인 미만에 39.41%, 10인 미만에 65.39%, 30인 미만에 85.17%가 집중되어 있어 여성이 더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 비율이 2015년 대비 2016년 소폭 상승된 모습임.

[표 2-21] 최저임금 수혜범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현황 (단위 : 명)

노동조합	2015년 3월			2016년 3월		
	남 성	여 성	합 계	남 성	여 성	합 계
없음	572,179	1,134,131	1,706,309	583,878	1,088,761	1,672,638
있 으 나 가입대상이 아님	67,696	94,252	161,947	48,811	70,180	118,992
가 입 대 상 이 나 가입하지 않음	8,277	9,257	17,534	10,163	8,387	18,550
가입함	14,952	13,870	28,822	21,239	15,099	36,339
합 계	663,103	1,251,509	1,914,612	664,091	1,182,427	1,846,518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2016년 각 해당연도 3월 원자료

- [표 2-21]에서 보이듯이 노동조합이 없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혜자들은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90%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많음. 2015년 여성은 90.62%, 남성은 86.29%가 무노조 기업에서 근무했으며 2016년에는 여성 92.08%, 남성 87.92%가 무노조 기업에서 근무해 두 성별 다 소폭 증가함.
- 최저임금 수혜자들 중 노동조합이 있지만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가 2015년에는 약 16만 2천 명, 2016년에는 약 11만 9천 명으로 무노조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생각하면 97% 이상의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받기 어려움(2015년-여성 98.15%, 남성 96.5%, 2016년-여성 98.01%, 남성 95.27%).
- 최저임금 수혜자 또한 노조가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것에 비해 노조가 있으면 가입한 것이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보아 노조가 있다면 가입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4) 비정규직 중 최저임금 미만 및 수혜자 현황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이슈보고서 중 김유선(2015)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에서 활용 기준으로 2016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 자료를 활용하여 최저임금 미만 및 수혜자 현황을 다양한 고용형태별 모습으로 보

고자함.

- 해당 기준의 장점은 비정규직을 장기임시근로, 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가내근로를 중복을 제외하고 더하여 산출하여 비정규직을 다양한 고용형태로 나누어서 분석 가능한 것임.
-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을 전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 미달자는 남성은 2배 이상, 여성도 아주 높은 비율을 기록함. 특히 정규직 비율이 매우 크게 줄어든 것이 보임.
- 여성 최저임금 미달자는 92.3%가 비정규직이며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에서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여성은 남성과 달리 전체 임금근로자 대상이 있을 때도 절반이 넘는 54.3%가 비정규직임.
- 최저임금 수혜자 범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율 보이고 있음. 남성은 여성보다 한시근로, 파견 및 용역에서 비율이 높음.
- 가내근로의 경우 전체에 비해서는 작은 비중이지만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남성이 관측되지 않거나, 여성이 10배 이상으로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2-22] 비정규직 성별 최저임금 미달자 및 수혜자 현황 1 (단위 : 천 명)

	수 (천 명)						
	전체	남 성			여 성		
		전체	미달	수혜	전체	미달	수혜
임금노동자	19,233	10,810	961	664	8,423	1,679	1,182
정규직	10,627	6,870	68	76	3,557	81	140
비정규직	8,393	3,818	858	562	4,575	1,550	1,003
임시근로	8,382	3,891	744	621	4,491	1,308	1,106
장기임시근로	4,545	2,039	468	325	2,506	993	618
한시근로	3,521	1,652	378	224	1,869	538	358
(기간제)	2,810	1,311	274	143	1,499	368	245
시간제근로	2,222	604	269	156	1,618	670	400
호출근로	758	540	105	70	218	129	55
특수고용	502	144	23	6	358	63	29
파견용역	910	448	123	68	462	129	95
(파견)	216	90	10	5	126	34	20
(용역)	694	358	113	63	336	95	75
가내근로	44	5	3	-	39	27	7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2016년 각 해당연 3월 원자료

[표 2-23] 비정규직 성별 최저임금 미달자 및 수혜자 현황 2 (단위 : %)

	비율 (%)						
	전체	남 성			여 성		
		전체	미달	수혜	전체	미달	수혜
임금노동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55.3	63.6	7.1	11.4	42.2	4.8	11.8
비정규직	43.6	35.3	89.3	84.6	54.3	92.3	84.9
임시근로	43.6	36.0	77.4	93.5	53.3	77.9	93.6
장기임시근로	23.6	18.9	48.7	48.9	29.8	59.1	52.3
한시근로	18.3	15.3	39.3	33.7	22.2	32.0	30.3
(기간제)	14.6	12.1	28.5	21.5	17.8	21.9	20.7
시간제근로	11.6	5.6	28.0	23.5	19.2	39.9	33.8
호출근로	3.9	5.0	10.9	10.5	2.6	7.7	4.7
특수고용	2.6	1.3	2.4	0.9	4.3	3.8	2.5
파견용역	4.7	4.1	12.8	10.2	5.5	7.7	8.0
(파견)	1.1	0.8	1.0	0.8	1.5	2.0	1.7
(용역)	3.6	3.3	11.8	9.5	4.0	5.7	6.3
가내근로	0.2	0.0	0.3	-	0.5	1.6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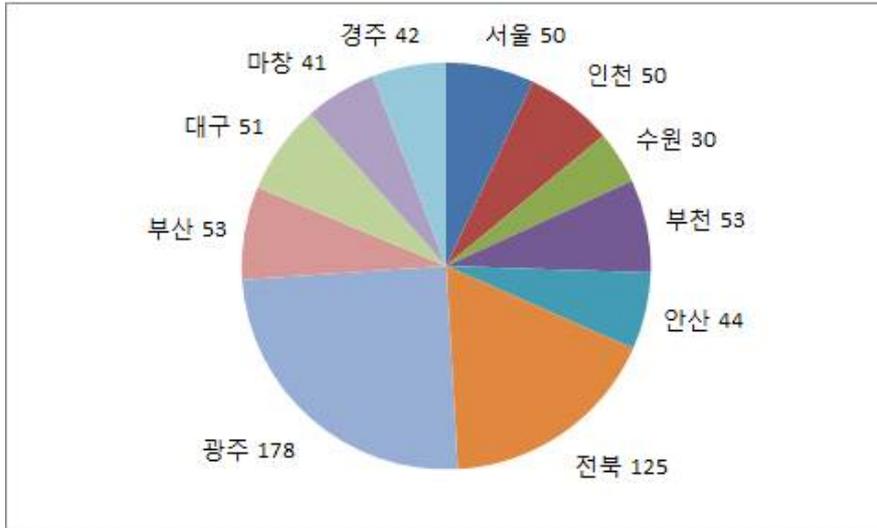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2016년 각 해당연도 3월 원자료

제3장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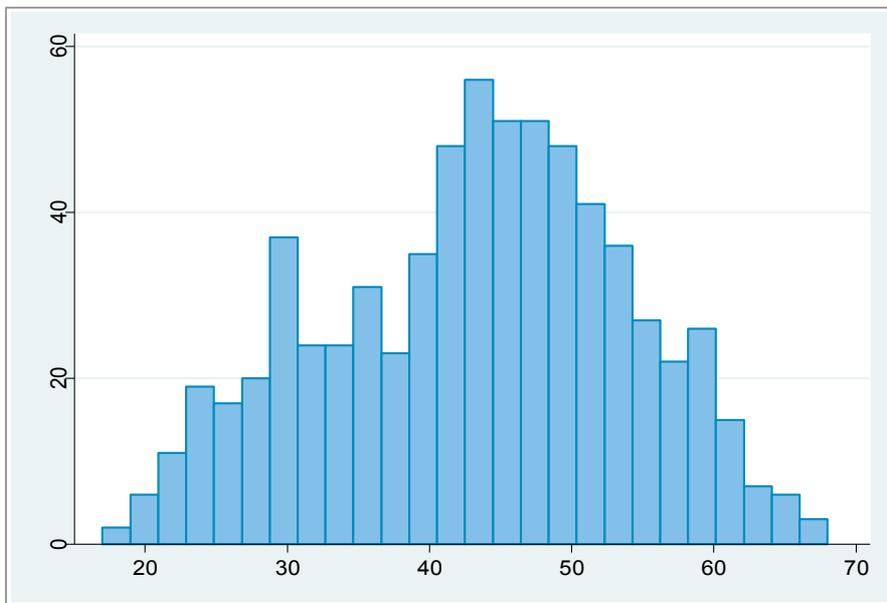
1. 조사개요

-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는 공식통계를 통해 파악되지 않는 여성노동자들의 소득활동 목적 및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 등의 조사를 목적으로 함. 특히 열악한 노동조건을 함의하는 저임금 노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함.
- 설문조사는 오프라인 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부가적으로 온라인 조사를 병행 실시함. 오프라인 설문조사는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1개 지역 여성노동자회를 통해 2016년 7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함. 설문지 배포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의 의의를 설명하여 최저임금 근방 또는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함.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6년 7월 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참여 가능한 URL 주소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및 여성단체, 최저임금연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공개함.
-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오프라인 조사가 726명, 온라인 조사가 207명이었음. 그 중 유효한 설문지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오프라인 조사의 유효한 표본 수는 717개, 온라인 조사의 최대 유효 표본은 180개임. 문항별로 유효 응답률이 다르므로 문항별 표본 수 또한 다름.
- 이하에서는 오프라인 조사와 온라인 조사 결과를 별도로 분석함. 오프라인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조사 결과가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낸 경우에는 온라인 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함.
- 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지역은 광주(24.8%)이고 다음으로 전라북도(17.4%)임. 다른 지역은 5% 내외(4.2% - 7.4%)에서 고르게 분포함. 응답자들의 연령대는 37.7%가 40대, 22.3%가 50대, 30대가 19.5% 순으로 많으며, 평균 연령은 43.3세임.

[그림 3-1] 오프라인 설문조사 지역별 응답자 수



[그림 3-2] 오프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연령분포



주: 가로축은 응답자의 연령, 세로축은 연령별 응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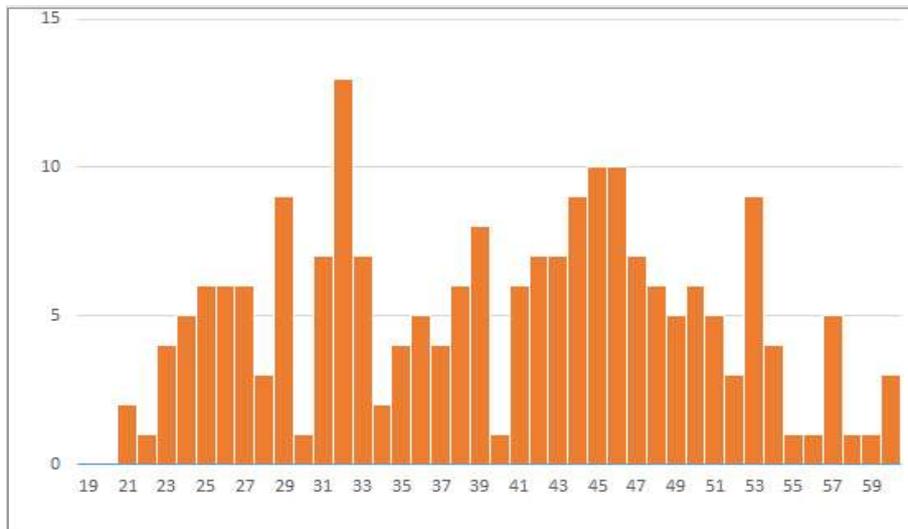
-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지역은 광주(20.0%)이고 두 번째로 많이 참여한 지역은 전라북도(18.9%), 세 번째는 경주 외 경북지역(18.3%)임. 이외에도 서울에서 16.7% 로 다수 참여함. 이외 지역은 인천과 안산의 경기도 지역이 7%대로 나타나고 기타는 2% 내외(1.1% - 3.9%) 수준으로 분포함.

[그림 3-3] 온라인 설문조사 지역별 응답자 수



-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연령대는 34.3%가 40대, 28.0%가 30대, 19.3%가 50대, 15.9%가 20대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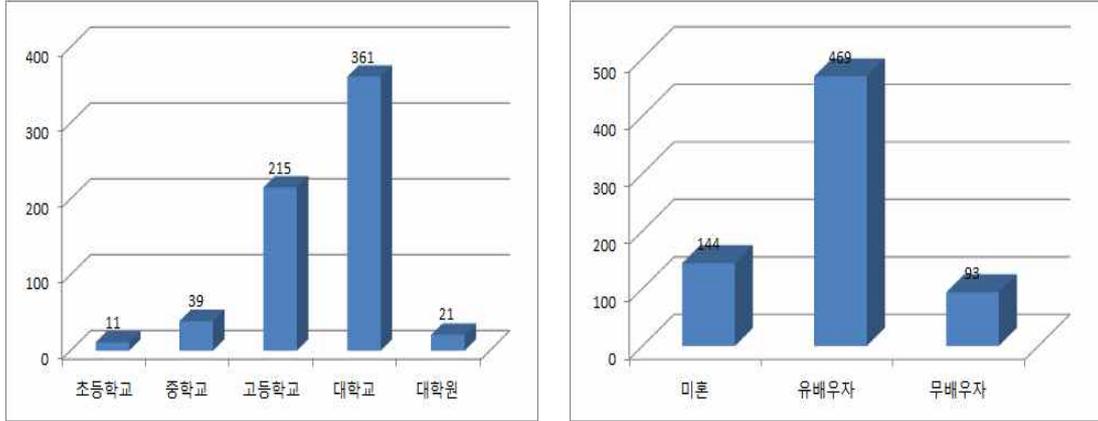
[그림 3-4]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연령분포



주: 가로축은 응답자의 연령, 세로축은 연령별 응답자 수

-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55.8%)가 절반 이상이고 다음으로 많은 고등학교 졸업자가(33.2%)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함. 전체의 약 3분의 2인 66.4%는 현재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4%가 미혼, 13.2%는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이므로 33.6%는 비혼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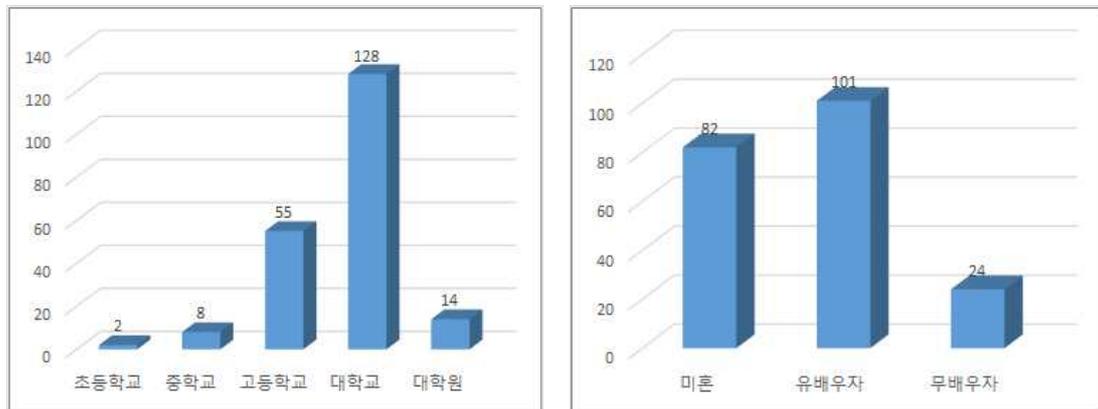
[그림 3-5] 오프라인 설문조사 학력별(좌), 혼인상태별(우) 응답자 수



주: 가로축은 학력 또는 혼인상태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61.8%)가 절반 이상이고 다음으로 많은 고등학교 졸업자가(26.6%)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함. 전체의 약 절반수준인 48.8%는 현재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9.6%가 미혼, 11.6%는 배우자가 없는 기혼자이므로 온라인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1.2%는 비혼 상태임.

[그림 3-6] 온라인 설문조사 학력별(좌), 혼인상태별(우) 응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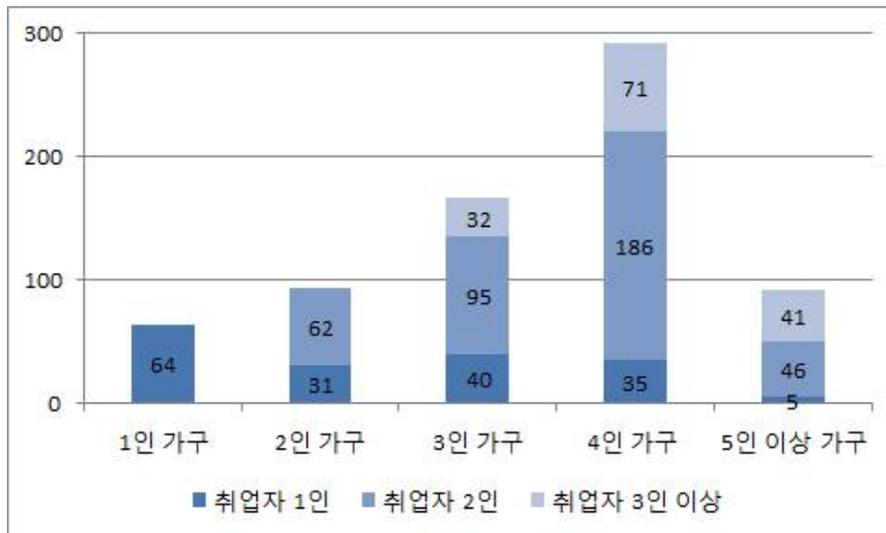


주: 가로축은 학력 또는 혼인상태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2.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조사 결과

1) 생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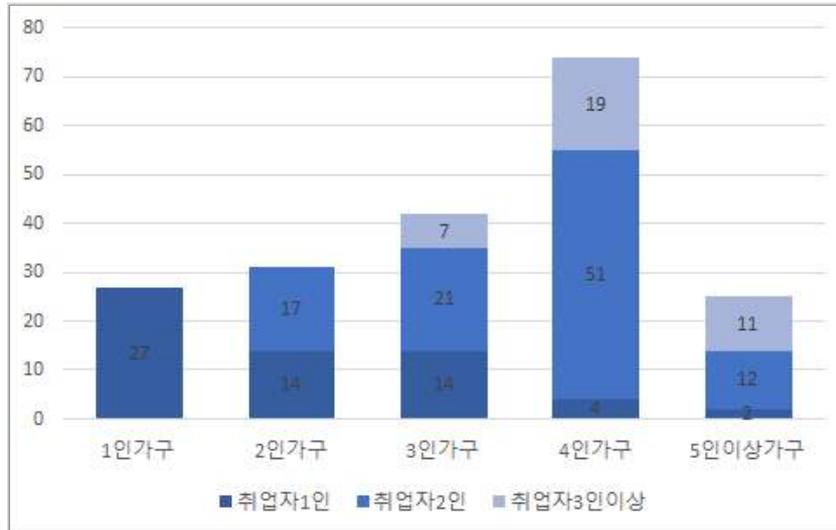
[그림 3-7] 가구규모별 취업자 수 분포



주: 가로축은 가구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 응답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은 4인 가구의 비중이 41.2%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3인 가구(23.6%), 2인 가구 (13.3%), 5인 이상 가구(13%), 1인 가구(9%) 순서임. [그림 3-7]에서 보듯이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가구의 대부분은 취업자 수가 2명 이상임.
-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응답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은 4인 가구의 비중이 36.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3인 가구(20.3%), 2인 가구 (15.5%), 1인 가구 (15%), 5인 가구(9.2%) 순서임. [그림 3-8]에서 보듯이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가구의 대부분은 오프라인 설문조사 응답과 마찬가지로 취업자 수가 2명 이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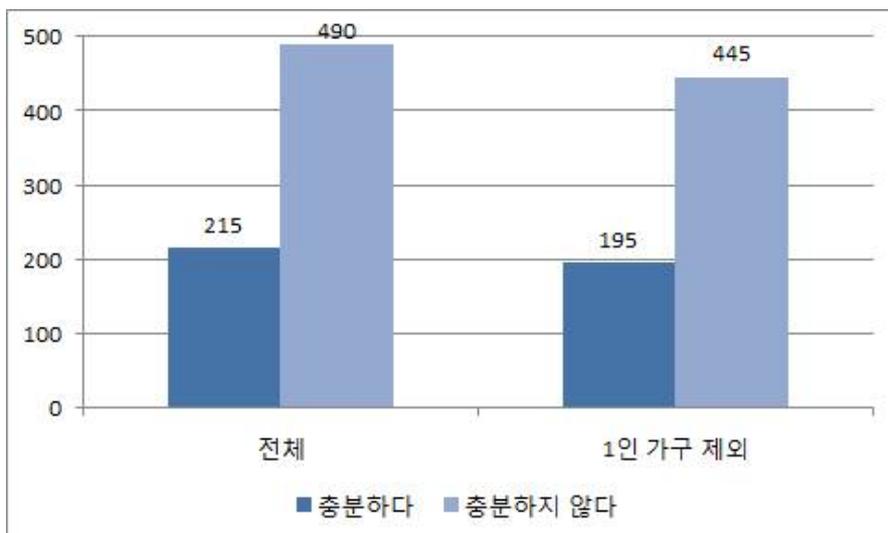
[그림 3-8] 온라인 응답자들의 가구규모별 취업자 수 분포



주: 가로축은 가구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 그러나 '현재 가구 내 취업자의 총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오프라인 설문조사의 응답은 30.5%, 온라인 설문조사는 34.3% 뿐이었음. 1인 가구를 제외해도 긍정적인 응답의 비중은 거의 같았음. 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이 생계비 부족을 이유로 임금노동을 하고 있음을 방증하며, 가구 내 취업자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계비 부족을 경험함.

[그림 3-9] "현재 가구 총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가



주: 가로축은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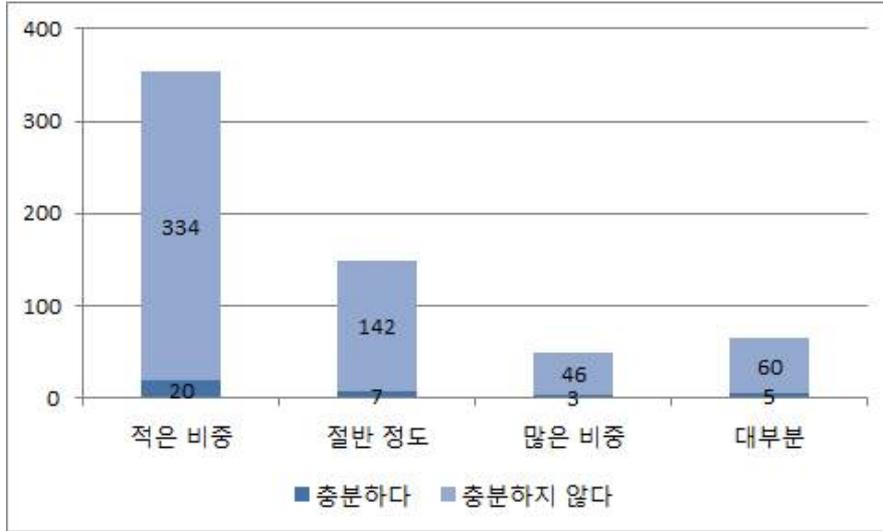
[그림 3-10] “현재 가구 총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가 - 온라인



주: 가로축은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비중이 92.2%였으며, 1인 가구를 제외하면 더 높은 94.3%가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음. 온라인의 경우 동일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대답의 비중이 전체 기준 86.7%, 1인 가구 제외 기준 88.1%로 응답함.
- ‘가구 총 소득 중 자신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질문에서 2인 이상 가구의 81.8%가 절반 또는 절반 이하라고 응답하였으나 어느 경우에도 자신의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응답이 많았음.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들도 2인 이상 가구의 79.3%가 가구 총소득 중 자신의 임금이 절반 또는 절반 이하를 차지한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3-11] “가구 소득에서 자기 임금의 비중”과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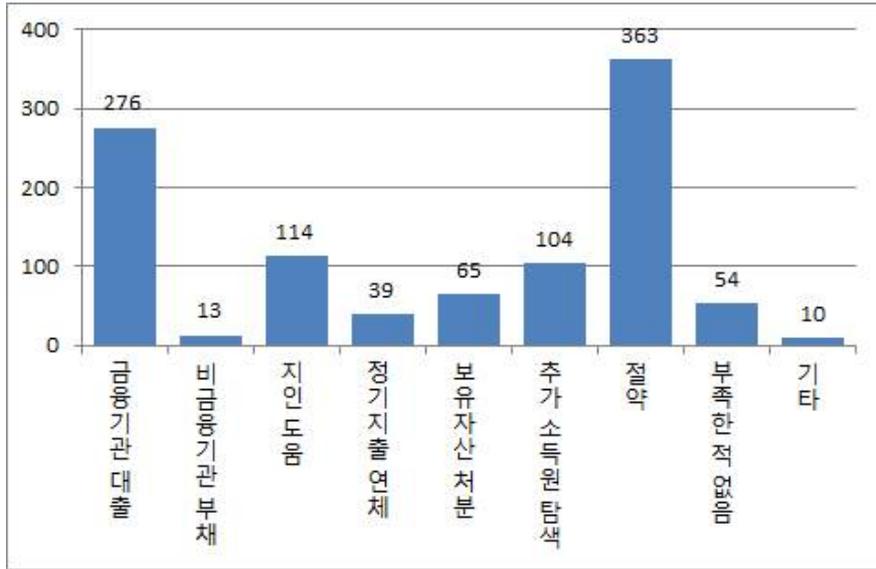
주: 가로축은 자기 임금의 가구 소득 내 비중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그림 3-12] “가구 소득에서 자기 임금의 비중”과
 “자신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가 - 온라인



주: 가로축은 자기 임금의 가구 소득 내 비중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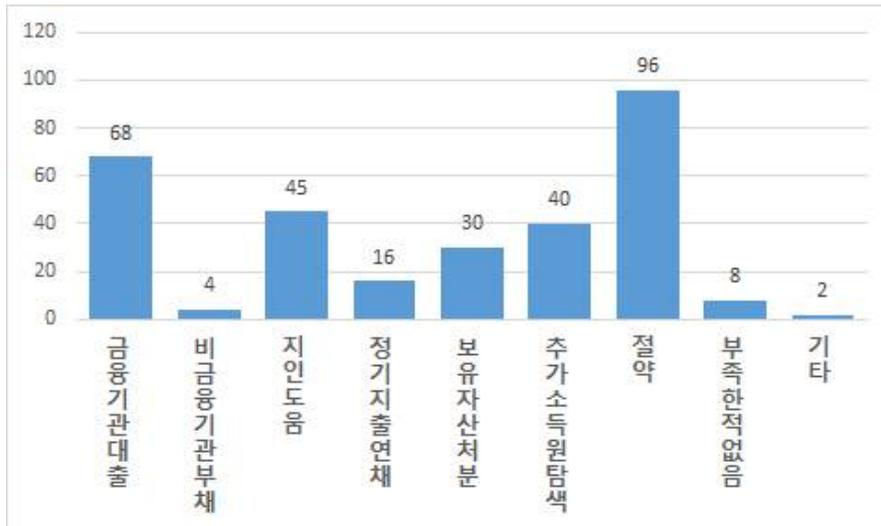
[그림 3-13] “생계비 부족시 선택한 대응방법” (복수응답, 단위 : 명)



주: 가로축은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그림 3-14] “생계비 부족시 선택한 대응방법”-온라인

(복수응답,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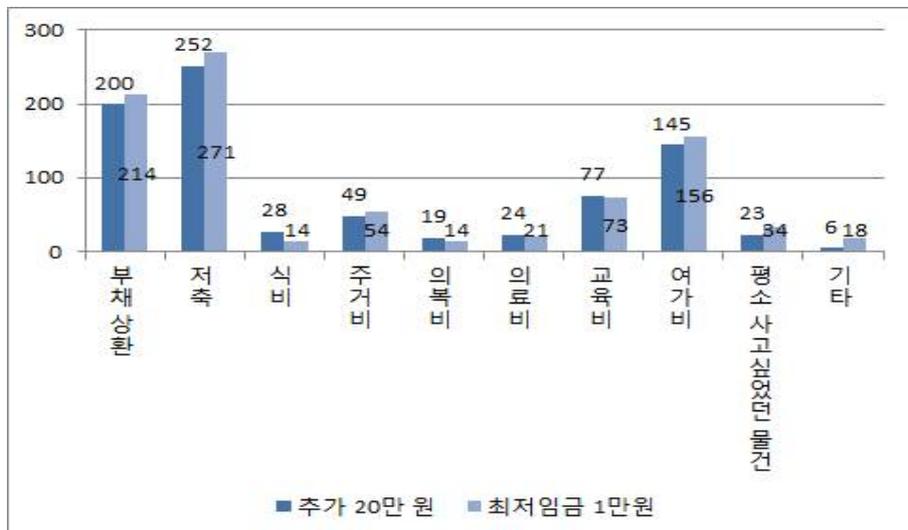


주: 가로축은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 ‘생계비 부족’에 대한 질문에서 생계비 부족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고 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비중은 단 7.7%였음. 온라인의 경우 더 적은 2.6%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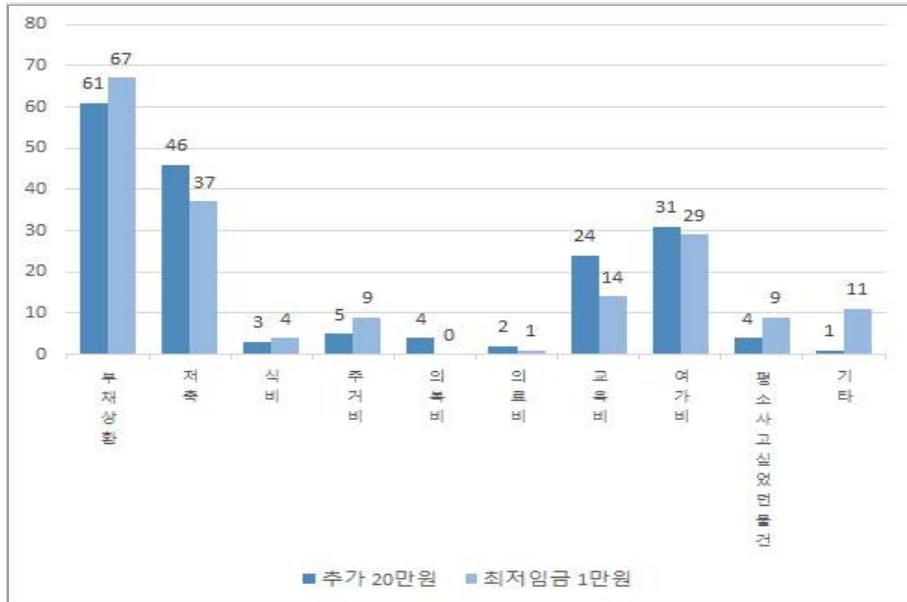
- 가장 많이 선택한 대응방법은 오프라인 조사 결과 절약(52%), 다음으로 많았던 응답은 금융기관 대출(39.5%)이었음. 그러나 1순위로 선택된 대응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39.5%)이 절약(28.7%)보다 많았음.
- 온라인 조사 결과도 오프라인과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남. 절약(31.1%)가 가장 많이 선택한 대응방법이었고, 금융기관 대출이 22%로 뒤를 이었음. 또한 동일하게 1순위로 한정했을 때 금융기관 대출이 37.6%로 22.7%였던 절약보다 먼저 대응방법으로 선택됨.

[그림 3-15] 추가소득 발생시 사용처(복수응답,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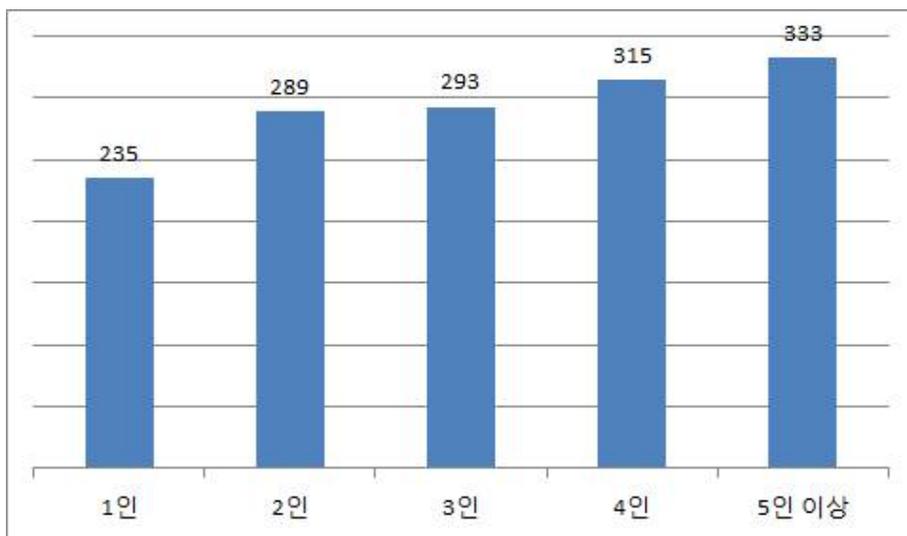
- 추가소득 20만 원 또는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됐을 때 사용처를 묻은 질문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응답은 '저축', 다음은 '부채 상환', '여가비' 순이었음. 이는 생계비 부족시 대응방법에 대한 질문과 일관된 응답임.
- 온라인의 추가소득 20만원 및 최저임금 1만원 달성시에 대한 반응은 [그림 3-16]과 같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응답이 '부채 상환'이고 두 번째가 '저축', 세 번째가 '여가비'임. 오프라인과 같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응답 3개는 동일하나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부채상환'임.

[그림 3-16] 온라인 추가소득 발생시 사용처(복수응답, 단위 : 명)



- [그림 3-17]에서 보듯이 가구 생계의 유지에 필요한 자기 소득 수준에 대한 주관식 응답은 가구 규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평균은 301만 원, 중위는 250만 원, 최빈값은 200만 원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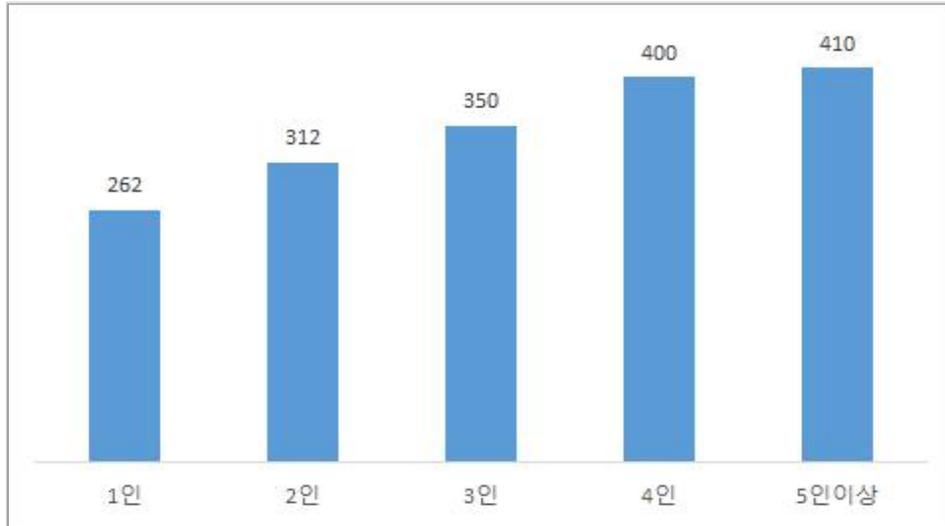
[그림 3-17] 가구규모별 “생계에 필요한 자기 소득 수준” (단위 : 만 원)



주: 가로축은 가구규모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그림 3-18] 가구규모별 “생계에 필요한 자기 소득 수준”-온라인

(단위 : 만 원)



주: 가로축은 가구규모 구분, 세로축은 응답자 수

- [그림 3-18]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나타난 가구 생계의 유지에 필요한 자기 소득 수준에 대한 주관식 응답임. 오프라인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구 규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기대 금액은 더 높은 수준임. 평균은 360만 원, 중위는 300만 원, 최빈값은 200만 원이었음.
- 가구 생계의 유지에 필요한 자기 소득 수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낮지만 후술할 현재 임금수준보다 높음. 이는 생계비 부족을 경험했거나 현재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다고 분석한 결과와 일관됨.

2) 임금실태¹⁰⁾

- [표 3-1]은 오프라인 응답자 일자리의 업종, 직종 분포를 나타낸 것임.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자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6.7%), 교육서비스업(18.4%)이었으며, 높은 비중의 직종은

10) 본 설문조사의 특성상 이하의 임금실태 조사 결과를 여성 임금노동자 일반의 상황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여성 노동자 일반의 실태보다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맞닥뜨리고 경험하는 주요한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각 구분 내의 차이와 경향에 집중하여 본다.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38.8%), 사무종사자(18.6%) 등이었음.

[표 3-1] 응답자 일자리의 산업, 직업 분포 (단위 : 명, %)

업종	수	비중	업종	수	비중
제조업	64	9.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177	26.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3	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7	1.1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1	0.2	협회 및 단체, 수차 및 기타 서비스업	53	8
건설업	15	2.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14	2.1
도매업 및 소매업	56	8.5	직종	수	비중
운수업	3	0.5	관리자	10	1.5
숙박업 및 음식점업	29	4.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57	38.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7	1.1	사무종사자	123	18.6
금융 및 보험업	5	0.8	서비스종사자	96	14.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0.2	판매종사자	43	6.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	2.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	0.8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61	9.2	기능업 및 관련기능종사자	10	1.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7	4.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8	4.2
교육서비스	122	18.4	단순노무종사자	90	13.6

- [표 3-2]은 온라인 응답자 일자리의 업종, 직종 분포를 나타낸 것임.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자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교육서비스업(27.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5.6%) 이었으며, 높은 비중의 직종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39.6%), 사무종사자(29.1%) 등으로 오프라인과 같은 직종에서 많이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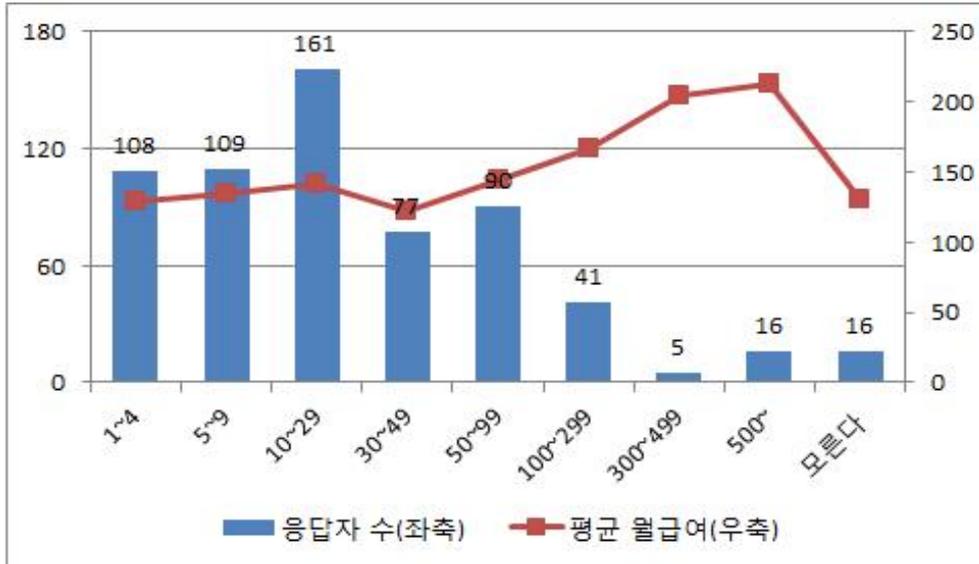
[표 3-2] 응답자 일자리의 산업, 직업 분포 - 온라인 (단위 : 명, %)

업종	수	비중	업종	수	비중
제조업	10	5.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28	15.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1	0.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	0.6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8	4.4	협회 및 단체, 수차 및 기타 서비스업	27	15
건설업	1	0.6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0	0
도매업 및 소매업	6	3.3	직종	수	비중
운수업	4	2.2	관리자	8	4.4
숙박업 및 음식점업	11	6.1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72	39.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6	3.3	사무종사자	53	29.1
금융 및 보험업	2	1.1	서비스종사자	27	14.8
부동산업 및 임대업	0	0	판매종사자	9	5.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	7.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	0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1	0.6	기능업 및 관련기능종사자	1	0.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	5.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	0.6
교육서비스	50	27.8	단순노무종사자	9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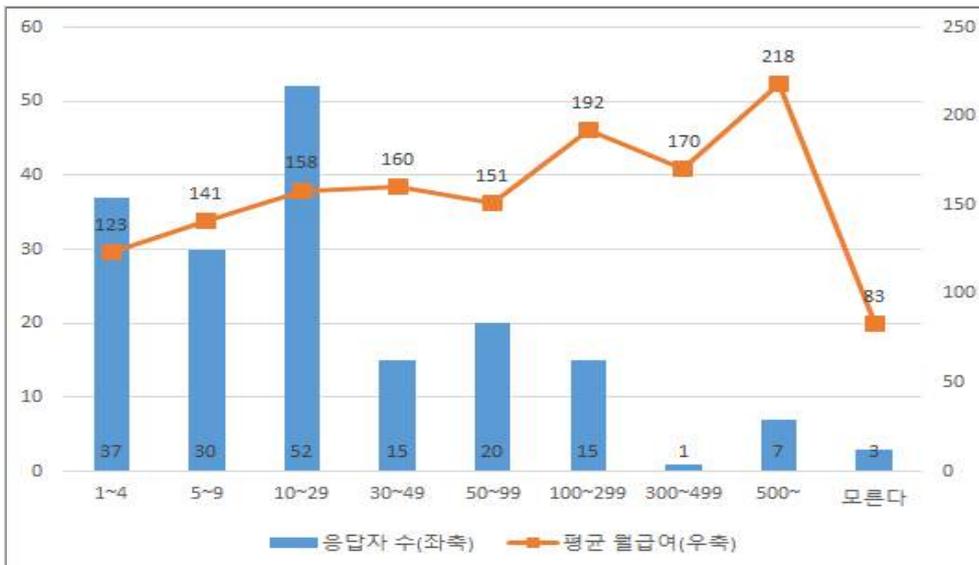
- 평균 임금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오프라인 응답자의 95.3%와 온라인 응답자 93.3%는 월 단위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 단위로 받는다고 응답한 비중은 오프라인 2.7%, 온라인 6.1%임. 이밖에 비정기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오프라인 1.3%, 온라인 0.6%였음.

- 가장 많은 응답자가 분포하는 사업체 규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0-29인 (오프라인 - 25.8%, 온라인 - 28.9%), 다음으로 오프라인은 5-9인 (17.5%), 1-4인(17.3%) 순서였으나 온라인은 1-4인(20.6%), 5-9인 (16.7%)순서로 많았음. 그러나 둘 다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높았음.

[그림 3-19] 사업체 규모별 분포 및 평균 월급여 (단위 : 명, 만 원)



[그림 3-20] 사업체 규모별 분포 및 평균 월급여-온라인 (단위 : 명, 만 원)



- 월 단위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오프라인 응답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9.7만 원, 중위 임금은 135만 원이고, 같은 응답을 한 온라인 응답자의 월 평균 임금은 156.1만 원, 중위임금은 150만 원 임.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오프라인 : 121.6만 원 - 213.3만 원, 온라인 : 122.6만 원 - 218만 원)을 보임.

[표 3-3] 고용형태별 비중 및 월급여 (단위 : 명, %, 만 원)

	오프라인			온라인		
	수	비중	월급여	수	비중	월급여
정규직	335	51.9	147.9	69	38.3	174.7
계약직(무기)	106	16.4	132.6	54	30.0	149.4
계약직(1년이상)	121	18.8	137.2	25	13.9	147.4
계약직(1년미만)	41	6.4	119.2	21	11.7	98.0
일용직	19	3.0	96.8	0	0	0
파견및용역	17	2.6	141.9	0	0	0
특수형태및기타	6	0.9	137.7	11	6.1	124.0

- 고용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오프라인의 경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정규직의 임금이 가장 높고 일용직, 1년 미만 계약직 순서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음. 온라인 응답자들의 비중은 오프라인에 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계약직 3개 항목의 합)이 비슷하게 나타남. 임금은 정규직이 가장 높고, 1년 미만 계약직이 가장 낮음.
- 산업과 직업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오프라인의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산업이 206.7만 원,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가 83.2만 원임.
- 오프라인 응답자들의 직업 중에서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순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 산업, 직업별 평균 월급여 (단위 : 만 원)

업종		업종	
제조업	137.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145.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206.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40.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130.0	협회 및 단체, 수차 및 기타 서비스업	124.2
건설업	140.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83.2
도매업 및 소매업	146.9	직종	
운수업	190.0	관리자	163.2
숙박업 및 음식점업	116.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49.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128.6	사무종사자	152.6
금융 및 보험업	164.2	서비스종사자	114.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80.0	판매종사자	12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8.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00.0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141.8	기능업 및 관련기능종사자	154.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59.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2.8
교육서비스	140.1	단순노무종사자	133.2

- 온라인 응답자들의 산업과 직업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응답자들과 동일하게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산업 분야의 평균임금이 250만 원으로 가장 높았음. 온라인 조사에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산업 응답자가 없었고,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이 122.1만 원으로 가장 낮았음.
- 온라인 응답자들의 중에서는 농업어업숙련종사자가 없었음. 판매종사자, 기능업 및 관련종사자, 서비스종사자 순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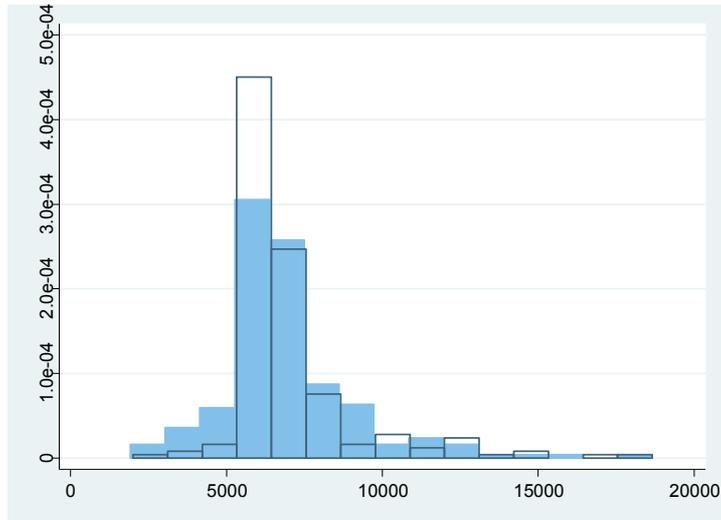
[표 3-5] 산업, 직업별 평균 월급여 - 온라인 (단위 : 만 원)

업종		업종	
제조업	167.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134.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25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190.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122.1	협회 및 단체, 수차 및 기타서비스업	139.4
건설업	300.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
도매업 및 소매업	158.0	직종	
운수업	119.3	관리자	144.1
숙박업 및 음식점업	135.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59.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215.2	사무종사자	161.6
금융 및 보험업	255.0	서비스종사자	140.3
부동산업 및 임대업	-	판매종사자	13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78.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170.0	기능업 및 관련기능종사자	14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74.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250.0
교육서비스	144.5	단순노무종사자	68.8

- 전일제, 월단위로 임금을 받고 있는 응답자 중 주간 노동시간이 40시간이라고 응답한 299명¹¹⁾을 대상으로 실제 시간당 임금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그림 3-21]에서 실제 시간당 임금과 인지된 시간당 임금의 히스토그램을 나타냄.
- 실제 자신의 시간당 임금을 더 높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저임금 미만이지만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인지된 시간당 임금의 평균은 7,852원인데 반해 실제 시간당 임금의 평균은 7,161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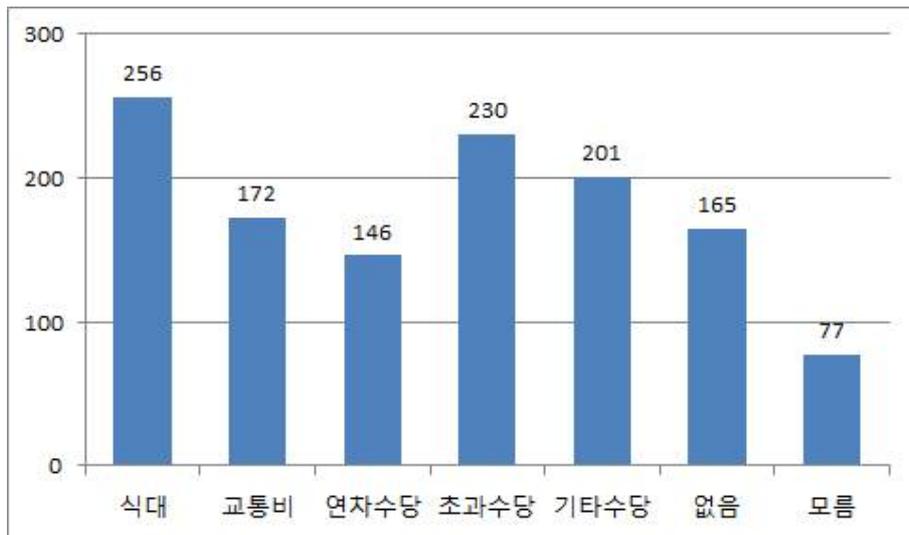
11) 소정노동시간을 40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61.2%이며, 근무시간의 형태가 다양할 때 주휴수당의 부정확한 추정이 있을 수 있어 표본을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응답자로 제한하였다.

[그림 3-21] 실제 및 인지된 시간당 임금 분포



주: 하늘색 도수분포는 실제 시간당 임금, 빈 사각형 도수분포는 인지된 시간당 임금

[그림 3-22] 임금구성항목(복수응답, 단위 : 명)



-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의 구성항목을 묻는 질문에서 오프라인 기준 23.8%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21.1%(연차수당) - 37%(식대)에서 선택되었으므로 최저임금 산입범주를 고려한 시간당 임금 수준은 더 낮을 수 있음.

3) 최저임금

[표 3-6] 최저임금 인지 여부 (단위 : 명, %)

	오프라인 설문결과			온라인 설문결과		
	최저임금 이상이다	최저임금 미만이다	전체	최저임금 이상이다	최저임금 미만이다	전체
알고있다	386	231	617	94	65	159
	(55.1)	(33.0)	(88.0)	(51.9)	(35.9)	(87.9)
모른다	43	41	84	12	10	22
	(6.1)	(5.9)	(12.0)	(6.6)	(5.5)	(12.1)
전체	429	272	701	106	75	181
	(61.2)	(38.8)	(100)	(58.6)	(41.4)	(100)

- 오프라인과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자 중 약 88%가 2016년 최저임금 수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자신이 받는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오프라인 기준 전체의 61.2%, 온라인 기준 58.6% 였음.
-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는 오프라인 응답자의 37.4%, 온라인 응답자의 40.9%는 자신의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즉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임을 알면서도 일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
- [표 3-7]을 참고하면 학력별로는 온라인(59.1%)과 오프라인(68.6%) 모두 대졸 이상의 학력의 응답자가 많았고, 다음으로는 고졸 응답자(오프라인-33.2%, 온라인-26.6%)가 많았음.
- 학력별 최저임금미만 비율은 오프라인의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대졸이상도 31.9% 비율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온라인의 경우 중졸이 가장 적은 비율로 응답함. 하지만 마찬가지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군도 30.3%가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응답자 3명중 1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음.

[표 3-7] 학력별 비중 및 학력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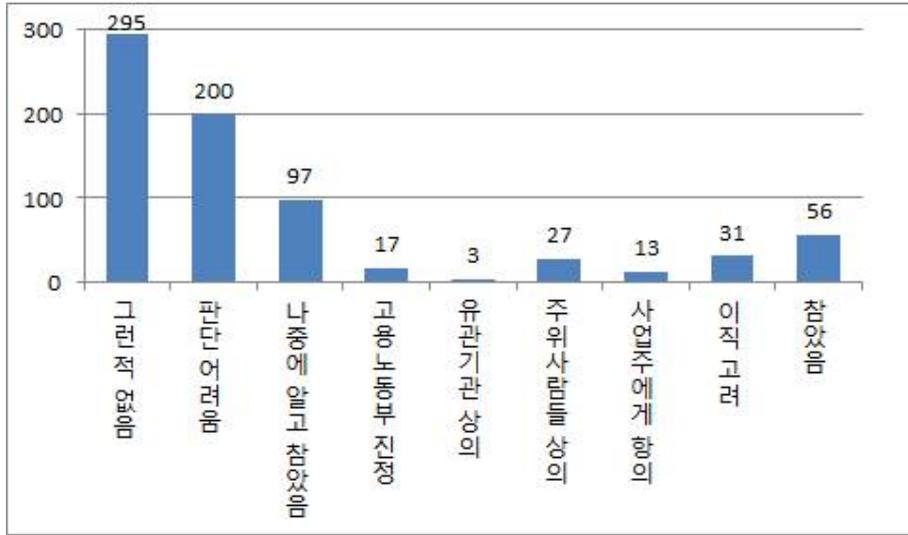
	오프라인				온라인			
	수	비중	최저임금 미만	비중	수	비중	최저임금 미만	비중
초졸이하	11	1.7	7	63.6	2	0.9	2	100
중졸	39	6.0	20	51.3	8	3.9	2	25.0
고졸	215	33.2	91	42.3	55	26.6	28	50.9
대졸 이상	382	59.1	122	31.9	142	68.6	43	30.3
합계	647	100	240	37.1	207	100	75	36.2

-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같은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함. 주휴수당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오프라인 응답자의 81.4%, 온라인 응답자의 86.4%는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추정하였는데,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오프라인 : 57.5%, 온라인 : 75.5%) 중 25.7% 또한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함. 다만, 오프라인 응답자들에 비해 온라인 응답자들이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율은 18%p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8] 주휴수당 인지 여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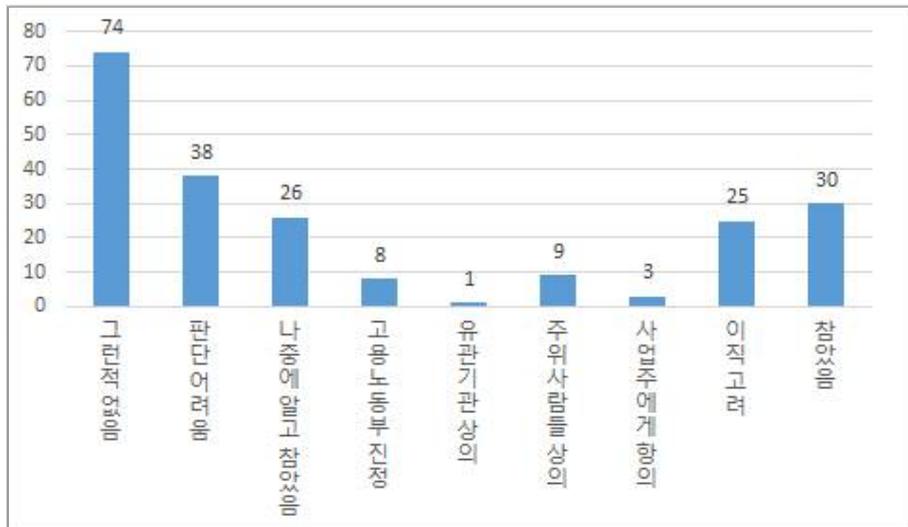
	오프라인 설문결과			온라인 설문결과		
	받고있다	받지못하 고있다	전체	받고있다	받지못하 고있다	전체
알고있다	283	98	381	101	35	136
	(42.9)	(14.9)	(57.7)	(56.1)	(19.4)	(75.6)
모른다	52	227	279	6	38	44
	(7.9)	(34.4)	(42.3)	(3.3)	(21.1)	(24.4)
전체	335	325	660	107	73	180
	(50.8)	(49.2)	(100)	(59.44)	(40.56)	(100)

[그림 3-23] 최저임금 미만 지불시 대응 경험(복수응답, 단위 : 명)



[그림 3-24] 최저임금 미만 지불시 대응 경험 - 온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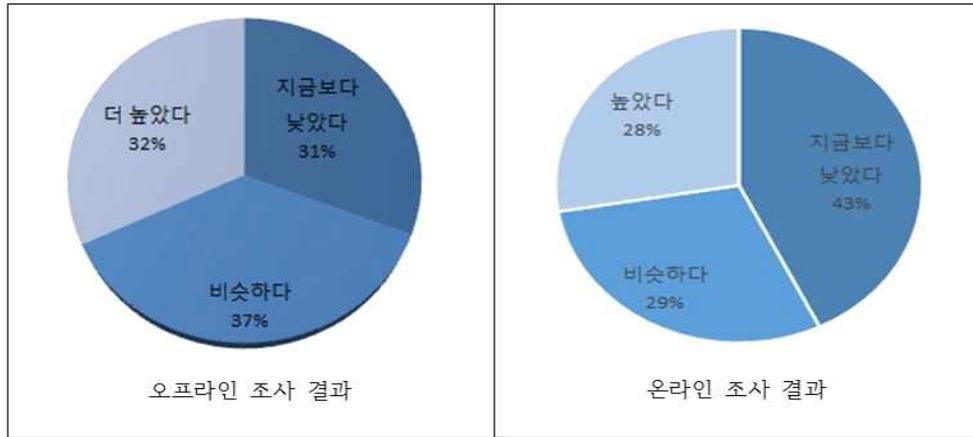
(복수응답, 단위 : 명)



- 과거 또는 현재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물었을 때 오프라인 응답자의 45.3%, 온라인 응답자의 34.58%만이 그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오프라인 응답자의 30.7%, 온라인 응답자의 17.8%는 판단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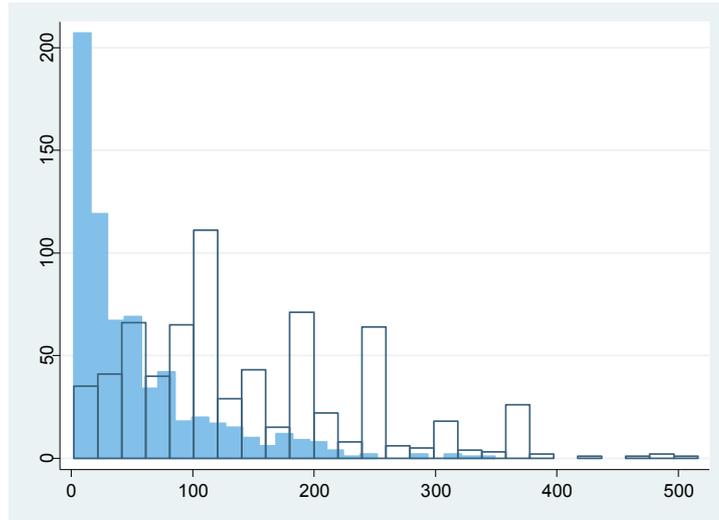
- ‘나중에 알고 참았음’은 오프라인 14.9%, 온라인 12.2%, ‘참았음’은 오프라인 8.6%, 온라인 14.0%의 응답자가 선택한 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음’은 오프라인 2.6%, 온라인 3.7%, ‘유관기관과 상의함’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0.5%, ‘사업주에게 항의함’은 오프라인 2%, 온라인 1.4%에 불과함.
-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절반이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를 경험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은,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현재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의 비중이 10% 이상이고 그중 다수가 여성이라는 평면적 현실을 통해서가 아니라—노동시장 입직 후 여성들의 생애를 관통하는 경험이자 위협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함.
-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여성들의 생애를 관통하는 경험이자 위협으로 공유되고 있음은 최저임금 미만에 대한 여성 다수의 대응이 ‘참았음’이라는 점에서 분명해짐.
- 참은 이유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서 대다수의 답은 “다 그렇게 받고 있어서”, “해고 될까봐”,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서”, “기관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동의하고 시작함”이었음.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가 특수하지 않다는 공유된 인식이 존재함.
- [그림 3-25]과 같이 과거 직장과 현재 직장의 임금을 비교하여 달라는 질문에 첫 직장이라고 응답한 오프라인 응답자 9.2%와 온라인 응답자 12.2%를 제외한 응답자들 중 과거에 비해 현재 직장의 임금이 더 높다고 응답한 비중은 오프라인 31%, 온라인 43%에 불과함.

[그림 3-25] 과거 임금과 현재 임금 비교



- 현재 직장에서 근속한 기간과 총 경력기간의 분포를 함께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그림 3-26]에서 보듯이, 총 경력기간에 비해 현 직장 근속기간은 왼쪽으로 크게 치우침. 이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이직이 많은 불안정한 일자리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응답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2개월, 중위는 30.5개월에 불과하지만, 평균 경력기간은 144.1개월, 중위는 120개월이었음. 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속이 어렵고 경력기간을 걸쳐 축적된 숙련이 외부 노동시장에서 숙련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는, 노동조건 개선의 기대가 어려운 영구한 저임금 노동자의 상태에 여성노동자를 가두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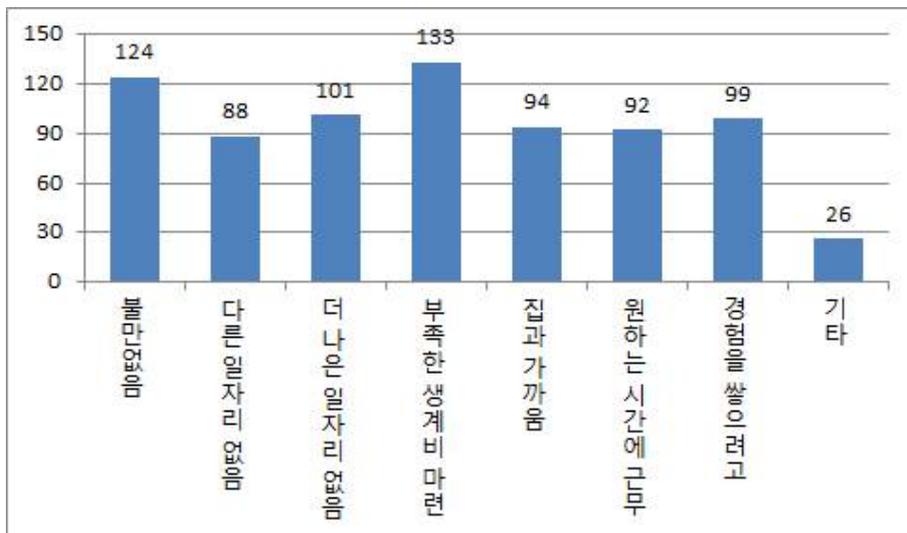
[그림 3-26] 현 직장에서 근속기간과 총 경력기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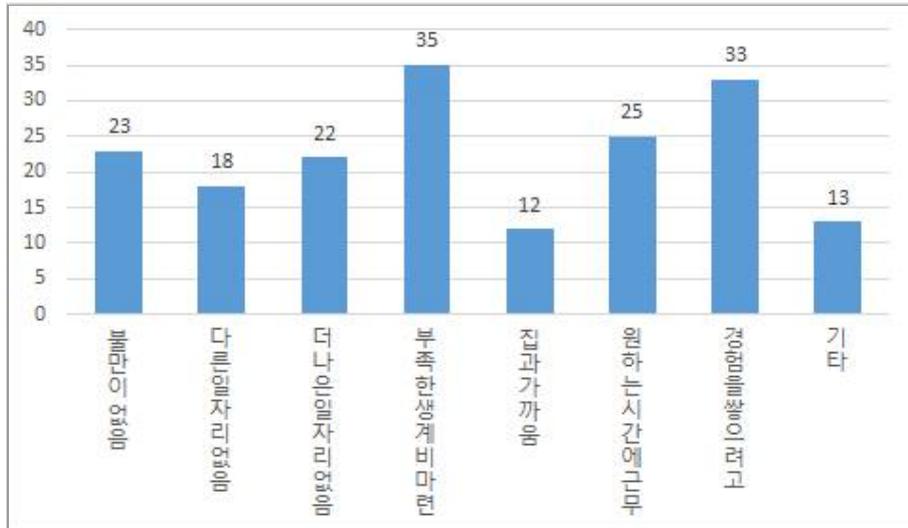
주: 하늘색 도수분포는 근속기간, 빈 사각형 도수분포는 경력기간

- 임금이 낮은 현재의 일자리를 떠나 다른 일자리를 이직한다고 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일자리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은 여성 노동자들의 경험 속에서 각인되고 공유되어 불합리한 임금과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고 참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봐야 할 것임.

[그림 3-27] 현재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유(단위 : 명)



[그림 3-28] 현재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유 - 온라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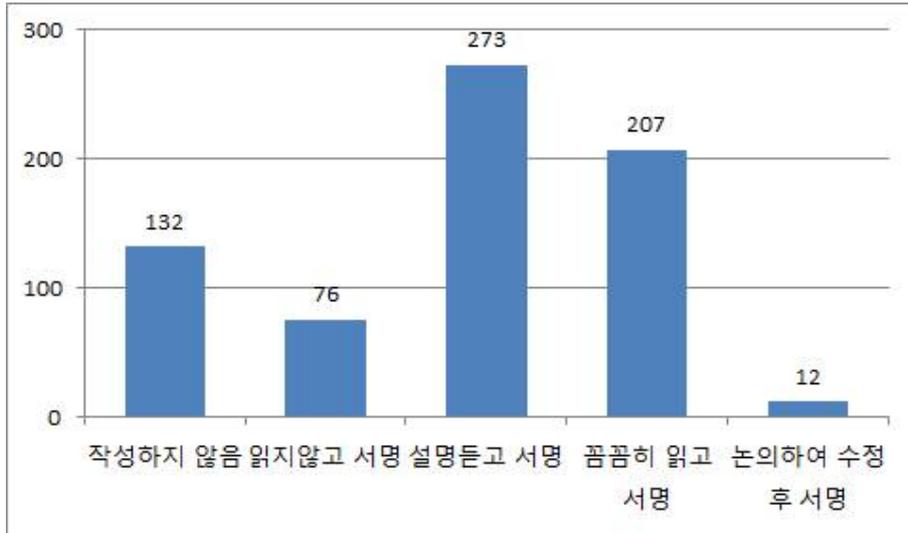
- 현재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이유를 묻은 질문에서 ‘근로조건에 특별한 불만이 없음’이라는 응답은 단 오프라인 기준으로 단 18%였고, 온라인 응답은 그보다 더 적은 12.7%였음.

- 가장 많은 응답은 온·오프라인 모두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부족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둘 다 19.3%)였음.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다른 일자리가 없음’(12.8%), ‘더 나은 일자리가 없음’(14.7%)도 많이 선택된 응답임. 온라인의 경우 ‘경험을 쌓기 위해’ 일을 한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음(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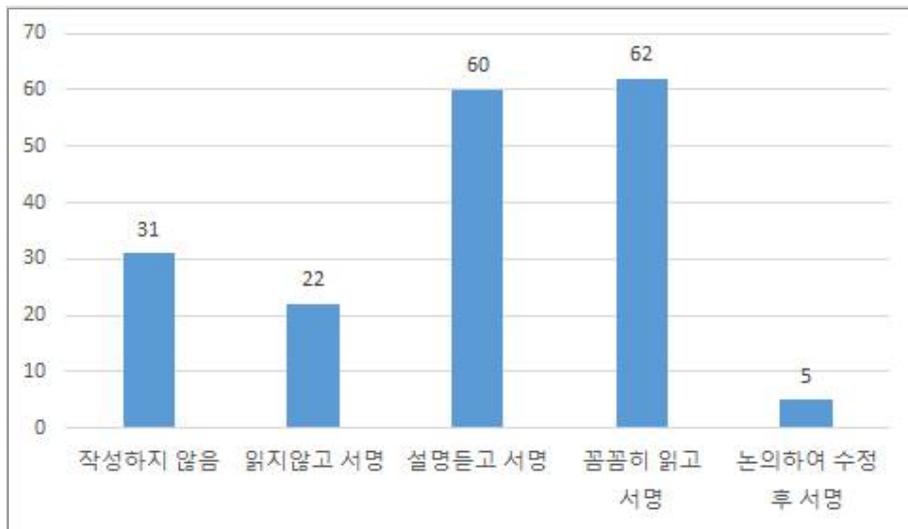
4) 기타 노동조건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응답자의 비중은 오프라인 응답자의 18.9%이고 온라인 응답자의 17.22%였음. 가장 많이 선택된 응답은 오프라인은 ‘간략한 설명을 듣고 서명’(39%), 온라인은 ‘꼼꼼히 읽고 서명(34%)’였음.

[그림 3-29]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단위 : 명)



[그림 3-30]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온라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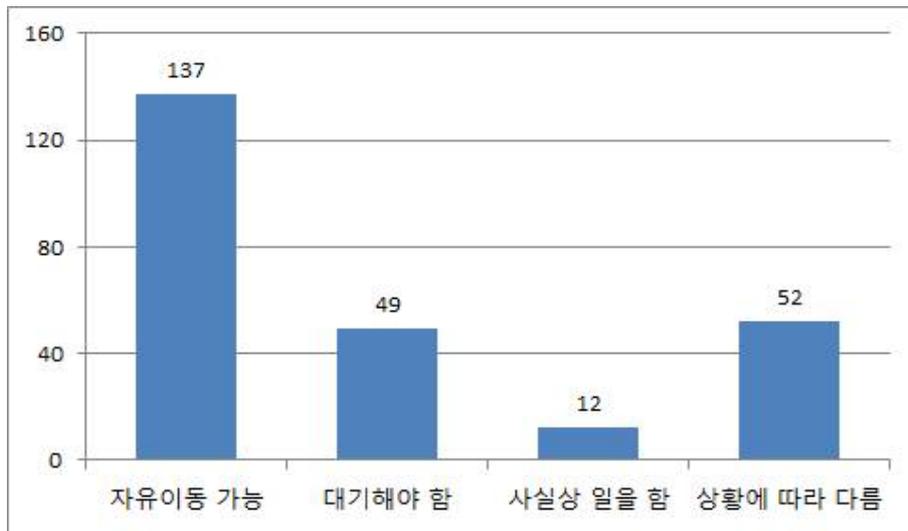


- 다수가 간략한 설명을 듣고 서명하는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지불받지 못하는 노동시간이 존재함.¹²⁾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있어 지불받지 못하는 임금으로부터 외화된 노동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임. 외화된 노동시간의 존재는 임금을 덜 받는 것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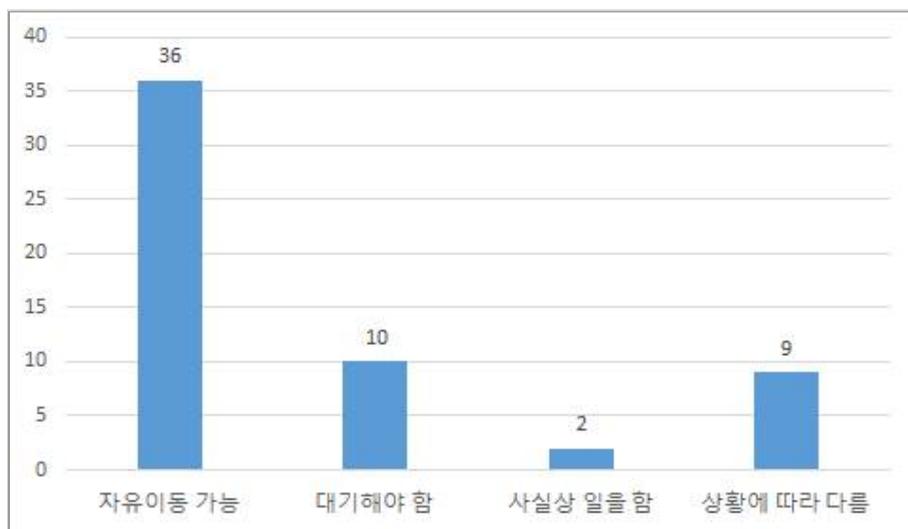
12) 이에 대해 정의된 용어가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임의적으로 임금으로부터 '외화된 노동시간'이라고 쓴다.

-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시간이 대표적인 외화된 노동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응답자의 평균 준비 및 정리시간은 32.5분, 중위는 30분이었음. 최빈값 또한 30분이 35.2%, 60분이 18%였음. 그러나 이러한 준비 및 정리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다는 응답자가 68.7%였음.

[그림 3-31] 휴게시간의 활용 가능성(단위 : 명)



[그림 3-32] 휴게시간의 활용 가능성 - 온라인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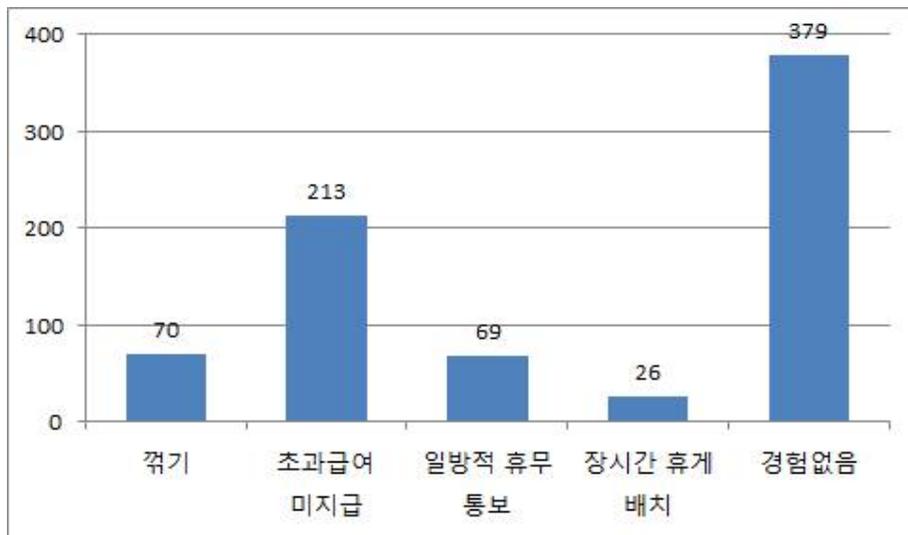


- 점심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휴게시간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질문한 결과, 오프라인 응답의 45% 이상, 온라인 응답의 36%가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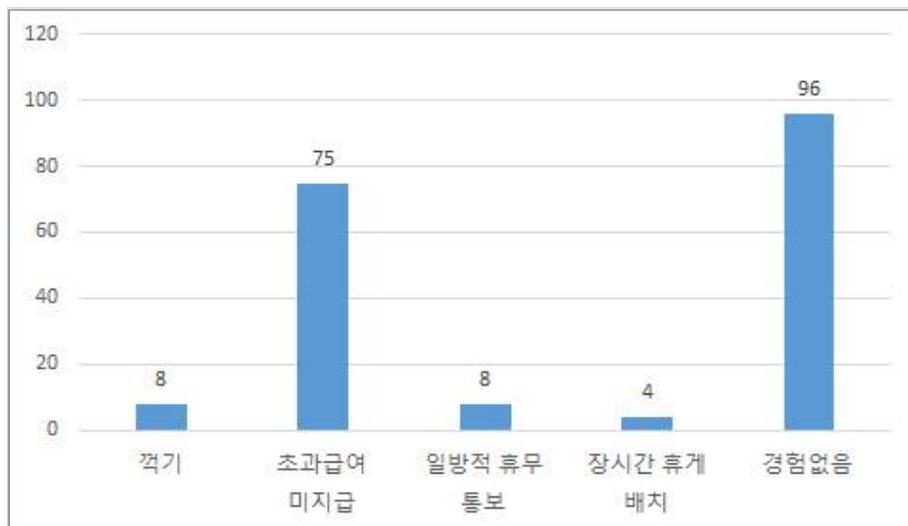
롭게 근무지 외부를 다녀올 수 없어 온전한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독립된 휴게공간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도 오프라인 50.4%, 온라인 54.4%로,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의 확보가 잘 되지 않는 일자리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음.

[그림 3-33] 부당 요구 경험(단위 : 명)



[그림 3-34] 부당 요구 경험 - 온라인 (단위 : 명)



- 노동시간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를 경험한 비중 또한 오프라인 기준 약 45%, 온

라인 기준 약 46%로 적지 않음. 가장 많이 경험한 부당 요구는 일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시간보다 더 길게 일했지만 그에 대한 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초과급여 미지급’으로 오프라인 응답자의 31.1%, 온라인 응답자의 36.6%가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음.

- 일이 없다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고 임금을 깎은 ‘꺾기’는 오프라인 응답자의 10.2%가 경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일이 없으므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꺾기’의 다른 유형 또한 10.1%가 경험했다고 응답함.
-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유니폼을 자비로 구매한 경험이 있는 비중도 오프라인 기준 17.9%, 온라인 기준 26% 임.
- 저임금 노동자들이 외화된 노동시간, 노동시간에 관한 부당한 요구, 작업에 필요한 유니폼, 물품 등의 자비 구매 강요로 인해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을 더 낮추는 조건의 개선이 시급함.

3. 소결

-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소득만으로도, 가구내 취업자의 총소득으로도 생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생계비 부족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은 단 7.7%였으며, 현재 일자리에서 종사하는 이유를 묻은 질문에 대한 가장 많은 응답 또한 ‘부족한 생계비 마련’(19.3%)이었음.
- 저임금 노동자에게 있어 생계비 부족은 저임금 노동자가 되고 저임금 노동을 지속하는 이유인 동시에 저임금 노동을 하면서도 꾸준히 겪는 경험하는 현실임.
- 오프라인 응답자의 95%, 온라인 응답자의 93%는 월 단위로 임금을 지불받고 있으며, 이를 노동시간에 의해 시간 단위로 환산한 자신의 시간당 임금을 더 높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음.

- 주휴수당, 초과급여 등의 임금구성항목 등을 제외하고 자신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기 어렵게 하는 점이 주요하게 기여하는 원인임.
-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88%의 응답자 중 37.4%(온라인 40.9%)는 자신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참으며 일하고 있다는 것.
-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임을 인지했을 때 대표적인 대응 방법은 참는 것으로, 이직을 해도 임금 수준이 다르지 않은 일자리를 갖게 되는 여성 노동자들의 공유된 경험은 불합리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수용하고 참게 만듦.
- 대졸자 여성이 응답자의 절반을 훨씬 넘는 수임에도 불구하고 대졸 이상 응답자의 30% 이상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여성=저임노동력'으로 간주되어 여성이 저임금 노동으로 내몰리는 차별적 구조에 있음을 확인함.
-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노동시장 입직 후 여성들의 생애를 관통하는 경험이자 위협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함.
- 외화된 노동시간, 노동시간에 관한 부당한 요구 등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을 더 낮추는 조건의 수용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가 여성노동자들로 하여금 수용되고 유지되는 까닭은 역설적이지만 그러한 일자리가 광범위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음.
- 최저임금 위반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에 있음. 즉, 최저임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일리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이상의 분석은 이러한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냄.
- 최저임금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저임금 여성노동자 일반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 단지 저임금층이 최저임금의 밀접한 영향 하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저임금 일자리 및 임금을 낮추는 조건들이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왔으므로 여성노동자들이 현재의 일자리를 수용하고 유지하는 상호강화 과정이 현재 저임금 여성노동자층의 형성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제4장 결 론

- 현재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노동시장의 양태는, 여성에 의해 저임금층이 과대대표 되고 연령 또는 경력에 따른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도록 남성과 다르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요한 점은 여성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저임금 문제’는 단지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의 문제가 아닌, 생계와 생활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절대적 저임금으로 경험되고 있다는 것.
- 이러한 상황을 ‘시장에서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그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의 문제로 보는 관점이 주류적 시각이지만, 무엇이 임금인지에 대한 경쟁하는 관점들이 존재하며 그러므로 저임금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할 수 있음.
- 어떤 상품이든지 자신의 생산비보다 가격이 낮으면 생산을 중단함. 그러므로 ‘시장에서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그 가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된다는 단언은, 생계비 이하의 임금을 받으며 공급을 계속하는 노동자의 존재 앞에서 자가당착 상태가 된다고 봐야 함.
- 본 조사에 따르면 저임금층을 과대대표 하는 여성들은 생계비 부족을 생애에 걸친 경험이자 위협으로 가지면서도 개선의 기대를 가지지 못하므로 수용하고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정책적인 지원이 장기적 시각으로 생애주기를 염두에 두고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최저 미만 임금이라는 악조건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생계비 부족한 경우가 많음. 그러므로 최저임금의 수준 결정시에 최저임금 미만 및 위험군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우선적,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함.
-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거부될 수 있으므로, 생계비를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도달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점진적이지만 노사 모두 예측 가능한 인상을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 및 기업에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징벌적 제도를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해야함.
- 특히 대규모 기업의 위반은 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음.
-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정확한 임금 수준과 산입범위나 부당대우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으므로, 징벌의 당위뿐만 아니라 예방의 관점에서 소규모 작업장 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야함.
- 이때 교육을 하지 않았을 시에 작업장에 페널티를 주기보다는 우수하게 수행한 곳에게 수상을 하는 식으로 긍정적 분위기를 유도하고, 교육할 여력이 없는 곳에는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이 저임금 일자리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사회서비스 분야 등에서 최저임금보다 높고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선도해야 함.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정부 조달 기업들과 나아가 민간 부문까지 확장하도록 노력해야함.

토 론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부장

저임금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연구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연구는 정부통계자료를 통해 저임금 일자리의 규모와 업종 특성 등을 파악하고, 나아가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임금 실태 조사를 수행하였다. 타당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료한 주장을 담고 있어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전반적으로 읽기가 쉽지 않고, ‘외화된 노동시간’ 등 불친절한 용어 사용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여성노동계의 일부 연구가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대중성 확보 차원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추후 주장의 일관성 및 설득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본고의 주요 발견과 주장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1. 기대보다 훨씬 심한 여성의 저임금노동자화

본고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사용하여 2015년 여성 6명 중 5명은 최저임금의 영향권 하에 있고 “경찰 부가조사”를 사용하여 2016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는 총 2,640,476명인데 여성이 1,679,380명으로 63.6%를 차지한다고 밝혀 여성 저임금 근로자 규모의 심각성을 보인다. 이것은 횡단면적 분석결과인데, 시계열적 분석 추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여성의 저임금화가 다소 완화되는 추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 결과가 확인된다면 본 결과의 타당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 윤정혜(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 중 중위임금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감소 추이를 보인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성별 임금격차를 보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김영미(2009): 경제위기 이후 저임금층에서 여성들의 상대적 위치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남녀 평균소득 격차의 감소는 주로 남성들의 집단 내 양극화 효과(저임금 남성의 증가)를 반영하고, 주로 소득 하층에서 여성의 상대적 지위가 개선된 데 기인한 것이다. 이는 상당부분 남성들의 집단 내 양극화 효과(소득하층이 두툼해지는)의 반영으로 여성의 성취라기보다는 남성의 몰락이라고 볼 수 있다.

2. 여성 저임금노동자의 내부 다양성

본고가 주장하듯이 여성노동자 내부에 저임금이 보편화되어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규모가 매우 크므로 이들을 단일 집단으로 간주하게 되면, 해법은 넓은 집단을 포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전략이외에는 나오기 힘들다. 예컨대 “최저임금 인상”이 그것이다. “여성은 저임금층을 과대대표하고 연령, 경력과 무관하게 저임금층으로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도록 남성과 다르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실천적 전략모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 이외에 추가적이며 단기에 대응가능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집단 내부의 다양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임금근로자 중 중위임금의 2/3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여성의 35.4%가 55세 이상 고령층에 해당하며, 여성 고령층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여성 취업자의 증가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여성 고용의 질적인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여성 고령층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실태를 별도로 분석하면 유용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도 온라인 응답자들의 산업과 직업별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응답자들과 동일하게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산업 분야의 평균임금이 25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이 122.1만 원으로 가장 낮아 저임금층 내부의 차이가 관측된다. 현재 실태조사 결과가 빈도분포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학력별, 업종별 교차분석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장 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1등위선 이하 및 한계 노동자 비중이 높고 여성 비중이 높은데, 이는 평균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제일 작은 숙박음식점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라는 본고의 주장이 좀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3. 여성 저임금 구조의 원인

- 여성직무의 저평가, 임금체계의 부재, 사라진 주휴수당

본고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저임금이 지속되는 이유는 성별 직무분리가 강한 조직에서 여성의 직무 자체를 저평가, 저임금화하거나, 아예 직무분석 없이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을 관행화해 온 데 이유가 있다.” 또 중소·영세기업과 이차노동시장에 존재한 여성 직종에서 임금체계의 부재하고 최저임금이 관행화되었다고 한다. 필자도

시간제 근로 연구에서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비례 대우 및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특성상 시간비례 원칙이 적용되는 임금의 범위가 축소·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향후 여성집중 일자리의 임금체계 분석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본고는 원자료 분석을 통해 총 근로자중 여성 비중은 약 41%인데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층에서 여성 비중은 ‘주휴수당 미고려’에서 54%, ‘주휴수당 고려’에서 58.1%이고,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당 정액급여를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은 4.64%이지만 주휴수당을 받았다는 가정 하에 시간당 정액급여를 재계산하면 미만율이 13.98%로 높아지는 것을 보였다. 이것은 최저임금 미준수의 높은 비중이 주휴수당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미준수 전체의 3분의 2 규모).

아울러 ‘한계 노동자’(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면 최저임금 이상이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하여 다시 계산하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분포가 더 높은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업 등에서 여성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러한 주휴수당 미지급의 문제가 여성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저임금) 여성노동자 임금실태 조사에서 주휴수당을 ‘알고 있다’가 온라인조사, 오프라인조사에서 각각 57.7%, 75.6%로(최저임금 인지도는 88% 87.9%) 낮다.

실제로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주휴수당, 초과급여 등의 임금구성항목을 이해하고 자신의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자신의 정확한 임금 수준과 산입범위나 부당대우 여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역량을 키우는 가칭 “내 임금 알기”, “주휴수당 알기”, “내 임금 지키기” 등의 프로그램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시도로 보인다.

4. 여성임금 연구

소득격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성별 소득, 임금격차는 동일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라가르드는 유럽에서 지난 50년간 평등정책이 시행되어 왔음에도 여성은 과소 활용되고 과소지불되고 과소평가되고 과도하게 착취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유럽 회원국가들은 부채감소를 위한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했으므로 (Stability and Growth Pact, SPG 조건 충족) 포용과 성평등 목표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¹³⁾ 유럽의 경우 경제적 호황과 인력부족의 시기에는 성평등 정책이

13) Diane Perrons(2015), Gender equality in times of inequality, crisis and austerity: towards gender-sensitive macroeconomic policies, *Visions for Gender Equality*, Francesca Bettio and Silvia Sansonetti(editors), EC.

활발했다가 저성장, 위기, 긴축의 시기에는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Smith and Villa, 2013).

그간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저임금, 성별 임금격차를 겨냥한 정책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에 대한 반성과 향후 관련 정책을 견인할 연구과제의 수행이 요구된다.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경제상황 및 긴축재정의 시기에 여성고용정책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찰과 여성집중 직종별로 임금체계 분석과 같은 심층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영국의 2010년 예산에서 공공지출 절감의 73%가 여성에게 직결된다는(WBG 2014) 실천적 예산분석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현실

김명숙(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부장)

「저임금 여성노동자 실태 연구」는 공식통계를 활용하여 저임금 여성노동자층의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크고 심각함을 보여준다. 여성노동자 6명 중 5명이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다는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의 기준임금’이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통계적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또한 여성노동자 임금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노동자의 저임금은 학력, 경력, 연령과 무관하며,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구조화된 성차별적 노동시장의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상담사례를 통해 접하게 된 최저임금 위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해 보고자 한다. 상담사례는 한국여성노동자회 산하 전국 10개 지역 여성노동자회의 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전화를 통해 접수된 상담 사례 중 최저임금 관련 된 건이다.

최저임금 상담 사례를 통해 본 여성 노동자의 현실

평등의전화에 최저임금 상담은 많이 접수되지 않는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당장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 평등의전화 상담실로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건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가 정한 급여에 맞춰 일할 사람 일해라

사례 1> 수영장 접수원, 찜질방 접수원, PC방 카운터, 편의점 아르바이트, 식당 등에서 시급 4,500원~5,000원 지급.

사례 2> 제조업 생산직으로 월~금요일 근무, 토요일 특근으로 오전 8:30~오후 5:30 동안 근무, 기본급 950,000원(특근 수당 별도 지급).

최저임금 미만임을 알면서도 여성노동자들은 왜 일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평등의전

화 상담원들이 전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생계비를 벌기 위한 일이 필요’해서 이다. 위의 사례처럼, 최저임금 미만을 제시하고 그 조건으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고용하는 사업장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 여성, 중고령층, 청소년 등 노동시장에서 상대적 약자들이 열악한 조건에도 이러한 일자리 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들의 노동은 생계가 아닌 ‘용돈벌이’일 뿐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노동시장 내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일자리가 있으니 일단 일을 시작하거나 최저임금을 알고 있어도 차비와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거주지 근처라는 것을 이점으로 여겨 참고 일하기도 한다. 이번 설문조사를 하면서 만난 지역의 한 여성 가장은 생계를 위해 ‘투잡(식당 서빙과 편의점 계산원)을 뛰고’ 있는데 모두 최저임금 미만의 일자리이다.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없어 할 수 없이 일하고 있고, 한 곳에서 일하는 것으로는 생계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일자리를 구했지만 이 역시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여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힘겨워하고 있다.

‘시간제’ 이니 일한 시간만큼만 최저임금 시급 수준으로 계산해 주겠다

사례 1> *쥬스 판매점에서 하루 8시간 주 5일, 시급 6,100원.*

사례 2> *제조업 생산직으로 근무하는데 매일 그 날의 일당을 시급 6,03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함.*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회사가 이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추가로 주어야 함에도 사업주도 노동자도 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세사업체의 경우, 사례 1의 경우처럼 ‘시간제 알바’라 칭하는 노동자가 하루 몇 시간을, 어느 정도 기간 일하던 상관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계산해 주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상당수 ‘시간제 알바’의 실제 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사업주는 의도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시간제’라는 꼬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사례 2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이처럼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는 모두 여성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2~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음에도 ‘시간제’ 노동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시급 이외에는 주휴수당 등 아무런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례 1이나 2 모두 하루 8시간, 주 5일 전일제 노동자와 동일하게 일하는(시간제라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주 6일을 일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으로는 시간제가 아님에도 ‘시간제 알바’ 라는 사용주의 명명만으로 시간제 노동자로 둔갑하여 주휴수당 등 법적 보장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다. 이처럼 시간제는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여성고용정책의 핵심 내용이 되고 있다.

휴게시간이니 임금이 없다. 그러나 설 수 없다

사례>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주간 오전 8시~ 오후 6시, 야간 오후 6시~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교대근무, 월급 1,400,000원(야간 수당 20,000원 별도). 야간 근무시간 중 일정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해 놓았으나 야간근무시간에는 총별로 1인만 근무, 지속적으로 환자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임. 월 8회 휴일.*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업장을 벗어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사례처럼 노동자가 사업장 내 항시 대기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건에서 사용자 임의로 휴게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휴게시간은 결국 노동시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명목상의 휴게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근로조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 임의로 휴게시간을 명시하여 임금을 깎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만큼 노동시간 단축, 그러나 업무량은 그대로

사례>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초등학교 청소를 했는데, 올해 갑자기 오전 9시~오후 3시까지로 근무시간 변경, 하는 일의 양은 줄어들지 않음.*

최근 여성고용의 증가가 중고령층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중고령층 여성노동자 상당수가 청소용역 등 간접고용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 최저입찰방식으로 결정되는 용역계약의 특성상 용역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선에 머물러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하는 일은 똑같지만 노동시간을 줄여 노동 강도를 높이는 등의 편법으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듯 최저임금 위반이 만연함에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된다.

최저임금 위반, 저임금 문제, 성별임금격차 해소 의지가 없는 정부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저임금 문제,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전혀 의지가 없어 보인다. 정부 및 공공사회서비스 영역의 비정규직 일자리나 돌봄 일자리 일자리도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대체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라는 것이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처벌 등을 통해 법 준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기도 하다.

국가가 앞장서 최저임금 위반, 장애인활동보조인

사례> 2016년,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수가를 시간당 9,000원으로 책정하여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기관에 지급. 9,000원에는 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 퇴직금과 운영비가 모두 포함된 것이나 최저임금 6,030원으로 계산해도 지원기관은 시간당 169원의 적자 발생,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4,745원의 적자 발생. 2017년 수가도 동결.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정부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보조인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수가를 책정하여 위탁기관이 최저임금을 지급하거나 적자를 감수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 돌봄의 공공성 확보라는 목표로 시행된 제도를 정부 스스로 공공성도, 돌봄노동자의 생계도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성평등 주간을 맞이하여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전국 10개 지역 평등의전화가 6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안 각 지역의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모집·채용 광고를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성차별적인 내용 뿐 아니라 ‘하루 12시간 근무, 월 2회 휴일, 월급 1,800,000원’의 조건으로 식당 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와 같이 최저임금 위반 광고가 수도룩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은 없다. 여성노동자들의 일자리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이다 보니 월 1,800,000원은 꽤나 괜찮은 일자리로 여겨지나 이러한 노동조건으로 일한다면 실제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최소 2,534,108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성별임금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여성노동단체는 노동시장에서의 법제도 마련에 힘써왔다. 여성노동자들의 다양한 문제를 법제도로 포괄하여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는 노

동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급격한 시장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사용자의 낮은 준수 의지와 정부의 의무 소홀로 무력화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14년 이제까지의 여성노동정책을 평가하며 ‘여성노동정책은 없다’고 진단하고, 2015년 ‘여성노동정책 기준을 묻다’며 여성노동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도 여성은 여전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몰려있음에도 법조문의 도움은 크지 않아 고용평등은 요원한 상태이다.

여성노동정책은 여성인력활용정책으로 양적 일자리 확대에 치중되어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여성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여성고용을 늘리겠다고 시간제 일자리를 적극 확대하고 있어 그나마 남아있던 혹은 기대해볼만한 양질의 일자리조차 열악한 시간제 일자리로 대체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앞장서서 가사와 돌봄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며 취업까지 하라는 것으로,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가 여성이 보조적이고 저임금 노동력이라는 통념을 고착시키며 차별임금을 강화하고 있을 뿐이다.

이제 여성노동정책은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표를 확고히 하고, 이를 실현하는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노동정책 뿐 아니라 경제, 산업 및 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제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현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간혹 위반여부로 제재를 받더라도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다. 따라서 관리감독을 강하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공약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내세운 바 있으며, 2015년 야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내용 이므로 정부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 여성집중 직종의 저임금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여성일자리 임금을 현실화하고 ‘괜찮은 일자리’로 변화

여성의 노동은 항상 저평가 되었다.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도 제한되어 왔으며, 주요 업무가 아닌 주변 업무로 한정되었다. 특히 돌봄노동은 더욱 가치절하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여성의 노동을 저임금 노동으로 전제하여 수립된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분야부터 임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켜

돌봄노동 분야의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의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민간 부문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정부조달 기업 선정 기준에 비정규직 비율 및 적정임금 지급 여부, 성별임금격차 정도 항목 포함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0.4%이며, 남성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정규직은 68.0%, 남성 비정규직은 52.6%, 여성 비정규직은 35.4%로 격차가 매우 크며, 임금노동자 중 여성은 43.8%로 이중 비정규직이 54.3%를 차지하고 있다.¹⁴⁾ 따라서 정부조달 기업 선정 기준에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기업, 임금 수준이 높은 기업, 성별임금격차가 작은 기업이 유리하도록 한다면, 민간 영역의 많은 기업에도 비정규직 비율 감소 및 임금향상, 성별임금격차를 낮추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저임금 여성노동자 집중 직종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권고안 마련

민간 기업에 강제하기 쉽지 않겠지만 저임금 여성노동자 집중 직종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단계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14) 김유선(201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3.) 결과”, ISSUE PAPER, 2016년 제4호(2016. 6. 1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종합토론]

[종합토론]

부 록

설문지

[부록]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ID				
----	--	--	--	--

임금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실태조사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파악을 통하여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에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면접원의 안내에 따라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관 :  한국여성노동자회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후원 :  한국여성재단
KOREA FOUNDATION FOR WOMEN

문의 : 한국여성노동자회 담당자 김명숙
 전화 02-325-6822(교 4)
 이메일 kwwa@hanmail.net

응답 및 기입요령

- 면접원의 안내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 본 설문지는 현재 임금을 받으며 취업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설문 응답 및 작성은 질문의 순서대로 보기항목에서 해당 번호를 선택하거나 직접 의견을 말 쓰해 주시면 됩니다.

응답자 기본 정보

1. 성별	2. 생년월	3. 최종학교		4. 졸업 및 재학 여부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양력 _____년 ____월	<input type="checkbox"/> 0) 무학 <input type="checkbox"/> 1)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2)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3)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4) 대학교 <input type="checkbox"/> 5)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1) 졸업 <input type="checkbox"/> 2) 재학(휴학포함)
5. 혼인상태	6. 가구원 수	7. 가구 내 취업자 수	8. 취업자 노동시간 형태	
<input type="checkbox"/> 1) 미혼 <input type="checkbox"/> 2) 기혼(배우자 있음) <input type="checkbox"/> 3) 기혼(배우자 없음)	본인 포함 총 _____명	본인 포함 총 _____명	가구내 취업자 중 전일제 총 _____명 가구내 취업자 중 시간제 총 _____명	

1. 귀하는 2016년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1)예 2)아니오

2. 현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예 2)아니오

3. 귀하는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1) 직장 소재지	_____시(군) _____구(읍·면·리)
2) 사업체(직장)의 종사자 수	<input type="checkbox"/> 1)1~4명 <input type="checkbox"/> 6)100~299명 <input type="checkbox"/> 2)5~9명 <input type="checkbox"/> 7)300~499명 <input type="checkbox"/> 3)10~29명 <input type="checkbox"/> 8)500명 이상 <input type="checkbox"/> 4)30~49명 <input type="checkbox"/> 9)잘 모름 <input type="checkbox"/> 5)50~99명

4.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 사업체가 하는 일은 '병원', 내가 하는 일은 '간호사' 등

- 1)사업체가 하는 일 _____
 2)내가 하는 일 _____

5. 귀하의 고용형태는 어디에 속합니까?

- 1)정규직
2)계약직(무기)
3)계약직(1년 이상)
4)계약직(1년 미만)
5)일용직(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6)파견 및 용역
7)특수형태 및 기타()

6. 귀하의 노동시간 형태는 어디에 속합니까?

- 1)전일제
2)시간제
3)정해지지 않음

7.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와 실제로 일을 하는 곳이 같습니까?

- 1)예 2)아니오

8. 현재 직장(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_____년 _____월

9. 귀하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습니까?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어떻게 작성하였습니까?

- 1)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음
2)근로계약을 보여주고 서명하라고 하였으므로 읽지 않고 서명함
3)근로계약서 내용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서명함
4)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서명함
5)근로계약서 내용 중 수정을 원하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논의하여 수정하고 서명함

* 근로계약서란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호 약속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계약기간 등의 조항을 포함한 계약서입니다.

10. 귀하께서 받는 임금은 다음 중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까?

- 1)일 단위
2)주 단위
3)월 단위
4)비정기적으로

11. 귀하께서 알고계신 현 직장에서 받는 임금은 얼마입니까?

평균 _____만 원

*임금을 받는 주기(문항10)에 준하여 기입하여 주시고, 비정기적인 경우 월 평균 총액을 계산하여 기입해주시시오.
 예) 일 단위 5만 원, 주 단위 20만 원, 월 단위 100만 원 등

12. 귀하가 알고 있는 임금 금액은 다음 중 어떤 기준 입니까?

- 1)세금 및 4대보험 등 공제 전
2)세금 및 4대보험 등 공제 후

13. 위 11번에 적어주신 임금에 포함된 항목들을 모두 골라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 1)식대
2)교통비
3)연차수당
4)연장근무 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5)기타 정기적인 수당(직무수당 등)
6)없음
7)무엇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름

***2016년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6,030원, 일급(하루 8시간 기준) 48,240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 1,260,270원입니다.**

14. 평균적으로 ‘한 주’ 동안 몇 시간 일을 하십니까?

1) 소정근로시간 (입사 시 약속한 시간)	총 _____ 시간 _____ 분
2) 실근로시간 (실제로 일하는 시간)	총 _____ 시간 _____ 분

*소정 근로시간을 모르는 경우 실근로시간만 작성하며, 30분 또는 10분 단위로 근무시간이 나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시오.
예) 주5일간 40시간으로 계약했으나 매일 2시간씩 잔업근무를 하는 경우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 실근로시간은 50시간

15. 귀하의 시간당 임금을 알려주십시오.

시간당 _____ 원

16. 귀하께서는 이 설명을 읽기 전에도 ‘주휴수당’ (아래 설명 참조*)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1)예 2)아니오

*주휴수당이란 노동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입니다.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회사가 이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여 주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17. 귀하께서는 ‘주휴수당’ 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예 2)아니오

18. 아래 쉬셨거나 쉴 수 있는 날짜에 모두 응답해주시시오.
(복수응답 가능)

- 1)2016년 5월 1일(일요일)
- 2)2016년 5월 5일(목요일)
- 3)2016년 6월 6일(월요일)
- 4)2016년 8월 15일(월요일)
- 5)2016년 10월 3일(월요일)
- 6)2016년 12월 25일(일요일)
- 7)쉴 수 있는 날 없음

19. 업무를 위해 준비하거나 업무를 마친 후 정리하는 시간은 하루 중 얼마나 됩니까?

하루 총 _____ 분

20.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고 있습니까?

1)예 2)아니오

21. 근무 시간 중 식사시간을 제외한 휴게(휴식)시간이 있습니까?

1)예 → 22번으로 2)아니오 → 26번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사이에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사업주는 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2. 하루 중 휴게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총 _____ 분

(휴게공간까지 이동시간 제외)하루 총 _____ 분

23. 휴게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하여 회사 밖 등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 합니까?

- 1)가능함
- 2)휴게시간에 일이 없어도 회사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함
- 3)이름만 휴게시간일 뿐 사실상 일을 해야 함
- 4)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다름

24. 독립된 휴게공간이 있습니까?

1)예 2)아니오

25. 현재 휴게시간이 적당하다고 느끼십니까?

- 1)적당함
- 2)임금을 지불받지 못하는 대기시간이므로, 너무 길다고 느낌(차라리 이른 퇴근을 선호함)
- 3)일 하는 중간이더라도 더 쉬고 싶지만 휴게공간까지 이동시간 등을 빼면 실제 휴게시간은 너무 짧음

26. 다음 중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겪은 적이 있는 경험을 모두 골라주세요. (복수응답 가능)

- 1)일이 없다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 변경(늦은 출근, 이른 퇴근)을 요구받아 임금이 깎임
- 2)일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시간 보다 길게 일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 3)일이 없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음
- 4)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업무 시간 중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배치하여 더 낮은 임금을 받음
- 5)위의 보기와 같은 경험 없음

27. 업무를 위한 물품이나 유니폼(작업복)을 자비로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 1)예 → 28번으로
- 2)아니오 → 29번으로

28. 지금까지 자비로 구매한 물품이나 유니폼(작업복)의 비용은 월 평균 임금의 몇 퍼센트(%) 였습니까?

총 _____ %

29. 최종학교 졸업 후 지금까지 취업해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총 몇 년 몇 개월입니까?

현 직장 포함 총 _____ 년 _____ 개월

30. 일을 했던 기간 중 경력단절 기간이 있었다면 총 몇 년 몇 개월입니까?

총 _____ 년 _____ 개월

31. 지금 또는 과거에 최저임금 미만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셨다면 당시에 어떻게 대응 하셨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1)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은 적이 없음
- 2)최저임금 미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움
- 3)일할 당시 최저임금 미만 사실을 몰랐으나 나중에 알게 되어 참았음
- 4)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음
- 5)유관기관에 상의
- 6)주위 사람들과 상의
- 7)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항의
- 8)그만두었거나 이직을 고려중임
- 9)참았음 (이유 : _____)

32. 과거 직장과 현재 직장의 월 평균 실질 임금수준을 비교하여 주십시오.

- 1)지금보다 더 낮았다
- 2)지금과 비슷하다
- 3)지금보다 더 높았다
- 4)첫 직장이다

*실질임금은 물가를 고려하여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이 동일하더라도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임금은 하락합니다.

33. 귀하가 현재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임금 등 근로조건에 특별한 불만이 없어서
- 2)당장의 생계에 어려움은 없으며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서
- 3)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아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싶지만 더 나은 일자리가 없어서
- 4)근로조건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부족한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일하지 않을 수 없어서
- 5)근로조건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집과 직장이 가까움
- 6)근로조건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어 시간활용이 용이해서
- 7)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경험을 쌓으려고
- 8)기타 _____

34. 귀하의 가구소득은 대략 얼마입니까?

월 _____ 만 원

*가구소득이란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소득의 합을 의미합니다.

35. 현재 가구 내 취업자의 총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십니까?

- 1)예
- 2)아니오

36. 귀하의 임금은 가구 소득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 1) 25% (가구 소득의 적은 비중을 벌고 있음)
- 2) 50% (절반 정도)
- 3) 80% (가구 소득의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지만 혼자 버는 것은 아님)
- 4) 100% (귀하가 가구 전체 소득을 담당함)

37. 귀하의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십니까?

- 1)예
- 2)아니오

38. 생계비 부족시 가장 먼저 선택했던 대응 방법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1)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등의 부채(은행, 카드 등)
- 2)비금융기관으로부터 부채(일수, 사채 등)
- 3)가족, 친인척,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
- 4)집세 및 세금 등 정가지출 연체
- 5)보유 자산 처분
- 6)단기 아르바이트, 부업 등 추가 소득원 탐색
- 7)절약하여 지출을 줄임
- 8)부족한 적 없음
- 9)기타 _____

39. 귀하의 소득이 월 평균 어느 정도이면 귀하의 가구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월 _____만 원

40. 현재보다 임금 수준이 월 20만 원 정도 높아지면 추가된 소득을 제일 먼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 1)부채 상환
- 2)저축
- 3)식비
- 4)주거비
- 5)의복비
- 6)의료비
- 7)교육비
- 8)여가비(여행, 문화생활, 친목 및 교류)
- 9)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 구입
- 10)기타 _____

41. 최저임금이 시급 만 원(월 209만원)이 된다면 당신의 소득 증가분을 제일 먼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 1)부채 상환
- 2)저축
- 3)식비
- 4)주거비
- 5)의복비
- 6)의료비
- 7)교육비
- 8)여가비(여행, 문화생활, 친목 및 교류)
- 9)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 구입
- 10)현재 월 209만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음
- 11)기타 _____

♠ 모든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최저임금 제도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소중히 활용하겠습니다.

※ 면접원 기재 사항

조사 실시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MEMO

세상을 바꾸는 사칙연산



한국여성노동자회
KOREAN WOMEN WORKERS ASSOCIATION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Tel. 02-325-6822 E-mail. kwwa@daum.net

Homepage. www.kwwnet.org

Facebook. www.facebook.com/euldang

Add.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62-5 공간여성과일 3층